

2026 PUBLIC R&D TRAINING

IGC 산학협력단 공공 R&D 교육

Public R&D Training for IGC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Staff

정책에서 기획·규정·연구개발비까지,
연구개발 전주기 실무교육 교재

일시 2026. 10. 12.(월) ~ 10. 13.(화)

장소 대전 인터시티

CONTENTS 수록 교재

00	교육 안내 오리엔테이션 · 교육 개요 및 일정	OT
01	정부 R&D 정책 39.5조원의 지도 — 정부 R&D는 어디서 정해지고 어디로 흐르는가	정책
02	과제기획 방법 및 절차 기획의 논리와 단계별 절차	기획
03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혁신법 체계 · 부처 규정 · R&D 프로세스 관련 규정	규정
04	연구개발비의 이해 비목별 사용기준 · 사용 및 정산 · 주요 불인정 사례	연구비
05	공공 R&D 연구비 불인정 사용 사례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유의사항 · RCMS 실무자 교육 매뉴얼	실무

00 교육 안내 OT 5

교육 개요	7
교육 일정	7
정부 공공 R&D 프로세스	8

01 정부 R&D 정책 정책 10

I. 숫자로 보는 R&D·국제비교	13
II. 최근 세 정부의 R&D	15
III. 국정기조와 3대 메가프로젝트	15
IV. 누가 움직이나: 부처와 전문기관	17
V. KEIT와 PD 제도	18
VI. 예산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19
VII. 정책이 과제가 되는 순간 (사례)	19
VIII. 연구 현장의 룰이 바뀐다	22
IX. 그래서 IGC는?	24
부록. 정부 R&D 용어 한 장	27

02 과제기획 방법 및 절차 기획 28

I. 과제기획	30
I-1. 정부 R&D 프로세스	30
I-2. 과제기획의 개요	31
I-3. R&D 전략 수립체계	32
I-4.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32
I-5. 과제기획 프로세스	33
I-6. 산업기술 R&D 지원범위	34
II. 사업공고문 및 RFP의 해설	36
II-1. 공고문의 주요구성	37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37
II-3. 과제유형별 RFP 예시	54
II-4. 공고문 관련 FAQ	55

03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규정 64

I. 산업기술 R&D 규정	66
01.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체계	66
02.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구성	68
II.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관련 규정	69
01.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69
02. 프로세스별 주요규정	71
산업기술 R&D 사업 요약	87

04 연구개발비의 이해 연구비 88

I.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이해	90
II. 연구개발비 일반	94
III.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97
IV.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정산	107
V. 주요 불인정 사례	110
Q&A · 규정 관련 문의처	114

SCHEDULE 교육 일정

1일차 10. 12.(월)

13:30 - 13:40	등록 및 개회 (교육목적 안내)	IGC 운영재단
13:40 - 14:15	정부 R&D 정책	KEIT 정찬혁 실장
14:25 - 15:00	기획 방법 및 절차	KEIT 전형호 박사
15:10 - 15:30	규정의 이해 : 혁신법 체계, 부처 규정	KEIT 전형호 박사
15:30 - 16:10	연구개발비의 이해	KEIT 전호승 수석
16:20 - 16:50	공공 R&D 연구비 불인정 사용 사례	강상일 회계사
16:50 - 17:10	질의응답	전체
17:20 - 19:00	간담회 및 기관 간 정보교류	IGC 운영재단

2일차 10. 13.(화)

09:30 - 09:40	등록	IGC 운영재단
09:40 - 10:10	산업기술 R&D 과제수행 노하우 안내	KEIT
10:20 - 11:40	산업기술 R&D 계획 수립 요령 안내	KEIT
11:40 - 12:00	질의응답	—
12:00 - 12:10	만족도 설문 및 수료	IGC 운영재단
12:10 - 13:00	간담회 및 기관 간 정보교류	IGC 운영재단

* 장소 : 대전 인터시티 회의실(본관 3층 오크홀) · 대상 : IGC 산학협력단 직원(5개 기관, 20명 내외)

05 공공 R&D 연구비 불인정 사용 사례 실무 115

PART 1. 2026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유의사항	116
01. 정산 불인정 사례	117
02. 상시점검 미흡사례	119
03. 기본안내사항	120
04. 공통사항	122
05. 인건비	125
06.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재료비	128
07. 연구활동비	130
08. 연구수당 · 간접비	136
09. RCMS	138
PART 2. RCMS 실무자 교육 매뉴얼 (2026 Ver.1)	143
01. 회원가입	145
02. 이용환경설정	147
03. 연구비현황 및 사용	155
04. 연구비취소 · 부가세복원	170
05. 연구비정산	173
06. 사전예방	179
07. 주요 불인정 사례	184
08. 자주 묻는 질문(FAQ)	189

00

OT

교육 안내

교육 목적·개요와 일정, 정부 공공 R&D 프로세스

일시 1일차 10. 12.(월) 13:30 - 13:40

강의 IGC 운영재단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CONTENTS

교육 개요	7
교육 일정	7
정부 공공 R&D 프로세스	8

13:40 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13:30까 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00-01

IGC 산학협력단
공공 R&D 교육

IGC INCHEON
GLOBAL CAMPUS

00-02

I-1. 교육 개요

교육목적

- ▶ IGC 연구기관의 공공 R&D 이해도 제고·참여 확대를 위해
산학협력단 실무진 대상 **연구개발 전주기 실무교육** 추진
(근거) 「IGC 국제공동 R&D 기획연구」 과업 중 'R&D 기획 및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이행

교육개요

일시	장소	대상	구성
 10.12(월) ~ 10.13(화) 13:30 ~ 익일 12:30 · 1박 2일	 대전 인터시티 회의실 (본관 3층 오크홀)	 IGC 산학협력단 직원 5개 기관 · 20명 내외	 총 7개 과목 정책·기획 2 · 실무 3 · 특강 2

참여기관

한국뉴욕주립대

켄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한국조지메이슨대

마린유켄트 코리아

I-2. 교육 일정

1일차 10.12(월)	13:30~19:00	2일차 10.13(화)	09:30~13:00
13:30~13:40 등록 및 개회 (교육목적 안내)	IGC 운영재단	09:30~09:40 등록	IGC 운영재단
13:40~14:15 정부 R&D 정책	KEIT 정찬혁 실장	09:40~10:10 산업기술 R&D 과제수행 노하우 안내	KEIT
	휴식 (10분)		휴식 (10분)
14:25~15:00 기획 방법 및 절차	KEIT 전형호 박사	10:20~11:40 산업기술 R&D 계획 수립 요령 안내	KEIT
	휴식 (10분)		
15:10~15:30 규정의 이해 : 혁신법 체계, 부처 규정	KEIT 전형호 박사	11:40~12:00 질의응답	-
15:30~16:10 연구개발비의 이해	KEIT 전호승 수석	12:00~12:10 만족도 설문 및 수료	IGC 운영재단
	휴식 (10분)	12:10~13:00 간담회 및 기관 간 정보교류	IGC 운영재단
16:20~16:50 공공 R&D 연구비 불인정 사용 사례	강상일 회계사		
16:50~17:10 질의응답	전체		
	휴식 (10분)		
17:20~19:00 간담회 및 기관 간 정보교류	IGC 운영재단		

■ KEIT 강의 라인업

6개 세션 · 총 240분

정책 → 기획 → 규정 → 연구개발비 → 과제수행 → 계획 수립

I -3. 강사 소개

1일차 10.12(월) · 정책·기획·규정·연구개발비

2일차 10.13(화) · 과제수행·계획 수립



정찬혁

KEIT 글로벌전략실장

정부 R&D 정책

현 담당

- 글로벌전략실 업무 총괄
- 글로벌 R&D 기획·평가·관리 총괄



전형호

KEIT 글로벌전략실 연구위원

기획 방법 및 절차
규정의 이해

주요 경력

- 前 첨단기계 PD
- 前 KEIT 기계장비팀장

현 담당

- 글로벌 R&D 제도개선 방안 발굴
- IGC 산학협력 트랙 운영



전호승

KEIT 글로벌전략실 수석

연구개발비의 이해

주요 경력

- 前 전기전자평가팀
- 前 디스플레이·우주항공 PD실
- 前 기술금융실

현 담당

- 글로벌 R&D 기획·평가·관리 총괄(부)
- 외국기관 MOU 관리



신동욱

한국광기술원 대외협력실장

산업기술 R&D
과제수행 노하우

주요 경력

- 한국광기술원 16년 근무(10~)
- 성과관리·기술사업화실장 역임

현 담당

- 사업관리실장(23.3~)
- 정책·기획·과제계약 총괄



이강우

KEIT 전략기획본부장

산업기술 R&D
계획 수립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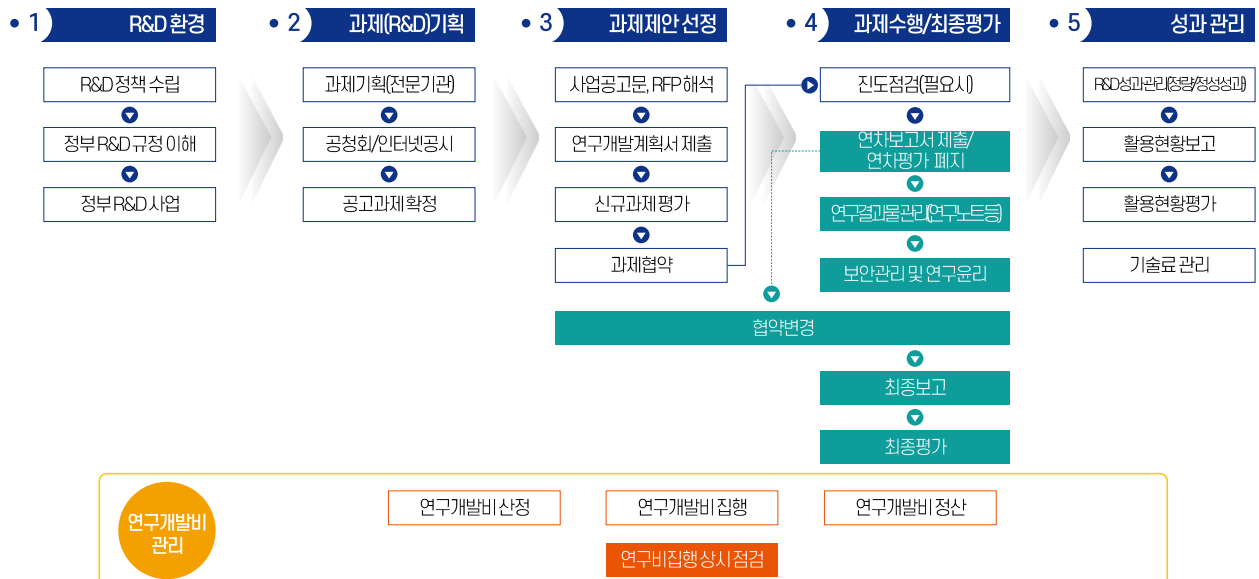
주요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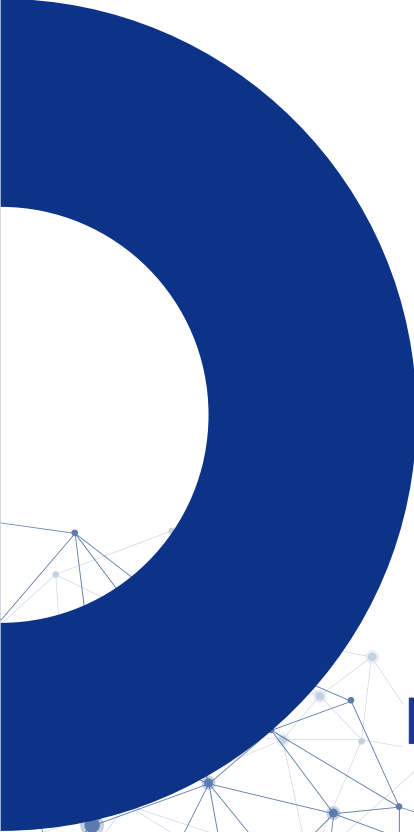
- KEIT 유럽(베를린) 사무소장
- 바이오헬스팀장·산업기술정책 단장 역임

현 담당

- 전략기획본부장(24.1~)

정부 공공 R&D 프로세스





감사합니다.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00-07

01

정책

정부 R&D 정책

39.5조원의 지도 — 정부 R&D는 어디서 정해지고, 누구를 거쳐, 어디로 흐르는가

일시 1일차 10. 12.(월) 13:40 – 14:15

강의 KEIT 정찬혁 실장

CONTENTS

I. 숫자로 보는 R&D·국제비교	13
II. 최근 세 정부의 R&D	15
III. 국정기조와 3대 메가프로젝트	15
IV. 누가 움직이나: 부처와 전문기관	17
V. KEIT와 PD 제도	18
VI. 예산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19
VII. 정책이 과제가 되는 순간 (사례)	19
VIII. 연구 현장의 룰이 바뀐다	22
IX. 그래서 IGC는?	24
부록. 정부 R&D 용어 한 장	27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IGC 공공 R&D 교육 (제1차) | 정부 R&D 정책

39.5조원의 지도

정부 R&D는 어디서 정해지고, 누구를 거쳐, 어디로 흐르는가

2026. 10. 12.(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9.5
조원

01-01

CONTENTS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오늘의 지도: 숫자 → 방향 → 구조 → 절차 → 현장 → 기회

- | | | |
|------------|-------------------|----|
| I | 숫자로 보는 R&D-국제비교 | 숫자 |
| II | 최근 세 정부의 R&D | 방향 |
| III | 국정기조와 3대 메가프로젝트 | 방향 |
| IV | 누가 움직이나: 부처와 전문기관 | 구조 |
| V | KEIT와 PD 제도 | 구조 |

- | | | |
|-------------|--------------------|----|
| VI | 예산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 절차 |
| VII | 정책이 과제가 되는 순간 (사례) | 사례 |
| VIII | 연구 현장의 룰이 바뀐다 | 현장 |
| IX | 그래서 IGC는? | 기회 |

* 부록: 정부 R&D 용어 한 장 (교재 배포용)

QUIZ 1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이 강의 40분 동안,
정부 R&D 예산은 얼마나 쓰이는 셈일까요?

1 3억원

2 30억원

3 300억원

힌트: 내년 정부 R&D 예산안은 39.5조원입니다

3

01-03

QUIZ 1 정답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정답은 ② 약 30억원입니다

39.5조원

2027 정부 R&D
예산안(1년)

÷

1,082억원

하루

÷

45억원

1시간

×

30억원

이 강의 40분

정부 R&D는 매일 1천억원씩 흐르는 큰 강입니다. 오늘은 이 강의 지도를 그립니다.

계산: 39.5조원 ÷ 365일 ≈ 1,082억원/일 → ÷ 24 ≈ 45억원/시간 → × 40/60 ≈ 30억원

IGC 공공 R&D 교육 · 정부 R&D 정책

4

01-04

WARM-UP · 어떤 기사가 눈에 들어오나요?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지원

뉴스로 보는 요즘 정부 R&D

SBS Biz

'26.9.1

내년 정부 R&D 예산 39조5천억원 '역대 최대'

PART I

헤럴드경제

'26.9.1

3대 메가+AI에 21.3조... '포스트 반도체' 첨단전략 41.4조

PART III

다음뉴스

'26.7.1

국가 연구개발 개선 1년...과기부 "자율성 높이고 과감한 도전 지원"

PART VII

다음뉴스

'26.7.20

한국 첫 '호라이즌 유럽' 선정... "그 뒤엔 숨은 설계자들 있었다"

PART IX

헤럴드경제

'26.5.19

인천글로벌캠퍼스, 산업 혁신 플랫폼 품 대전환

PART IX

데일리안

'26.7.31

KEIT, IGC 운영재단과 글로벌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추진

PART V

기사 제목 인용(원문 그대로) · 각 매체 보도일 기준 · 기사 본문·사진은 각 언론사 저작물

IGC 공공 R&D 교육 · 정부 R&D 정책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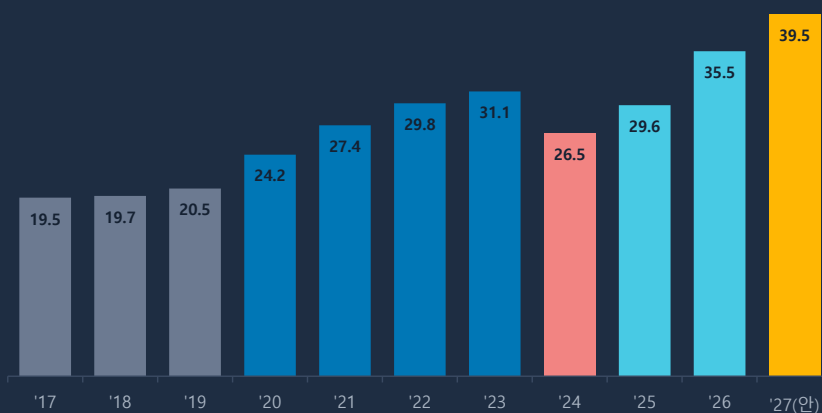
01-05

I · 숫자로 보는 R&D 10년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지원

정부 R&D 예산, 10년 만에 2배

■ ① 완만한 증가 ■ ② 빠른 증가 ■ ③ 감액 ■ ④ 다시 확대 ■ '27 정부안



2배

19.5조 → 39.5조
('17 → '27 정부안)

약 7%

연평균 증가율

1번

10년 중 감액은
'24년(-4.6조) 한 번

출처: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 연도별 예산 발표 및 언론보도 종합 · 확정예산 기준('27은 정부안, 국회 심의 중) · 소수점 반올림

IGC 공공 R&D 교육 · 정부 R&D 정책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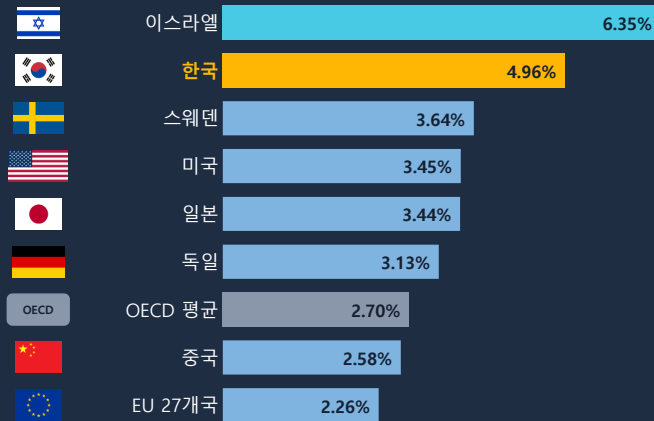
01-06

I · 숫자로 보는 R&D | 국제 비교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지원

GDP 대비 R&D 투자,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

국가 총연구개발비 / GDP (2023년, %)



총연구개발비 / GDP

2위

5.13% ('24) — 처음 5% 돌파
1위 이스라엘 6.35%

정부 R&D / GDP

1위

약 1.1% — 정부 발표 기준
(노르웨이·독일 앞섬)

민간·외국 재원 비중

79%

R&D 돈의 약 4/5는 기업
정부·공공은 21%

출처: OECD MSTI(2023, SSTI 정리), Eurostat(EU 2023 추정), 과기정통부 2024 연구개발활동조사(해럴드경제 '25.12.25), 뉴시스('21.9.2, 정부 R&D/GDP 1위)

IGC 공공 R&D 교육 · 정부 R&D 정책

7

01-07

I · 숫자로 보는 R&D 10년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지원

10년 추이가 산학협력단에 주는 시사점 4가지



계속 커지는 시장

장기 추세는 우상향

→ 정부 R&D는 앞으로도 커지는 시장 → 참여 확대 기회



해마다 출렁임

'24 감액 → '26 +19.9%

→ 한 사업에만 기대지 말고 여러 부처·사업으로 분산



집중 분야의 이동

소부장 → 전략기술 → AI

→ 정부가 바뀌면 공고 키워드부터 확인



과제의 대형화

신규 3.3조, 대형과제 확대

→ 단독 신청보다 컨소시엄 참여가 유리

IGC 공공 R&D 교육 · 정부 R&D 정책

8

01-08

II · 최근 세 정부의 R&D, 무엇에 집중했나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지원

기조는 바뀌어도, 핵심 산업은 이어진다

구분	문재인 정부 ('17~'22)	윤석열 정부 ('22~'25)	국민권정부 ('25~)
핵심 기조	4차 산업혁명 · 혁신성장	국가전략기술 · 임무중심 R&D	AI 대전환 · 과학기술 주도 성장
집중 분야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소부장 자립, 디지털·그린 뉴딜	12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R&D 확대	3대 메가(반도체·퍼지컬AI·AIDC) NEXT 국가전략기술
제도 변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R&D 규정 통합)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예타 폐지 추진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평가등급제 폐지, 연구혁신비 5극3특 균형성장
예산 흐름	첫 20조 돌파('19) → 29.8조('22)	31.1조('23) → 26.5조('24) → 29.6조('25)	35.5조('26) → 39.5조('27안)



공통분모 반도체 · 바이오 · 첨단제조는 세 정부 모두의 핵심
→ 이어지는 것은 '분야', 바뀌는 것은 '키워드와 방식' — 공고문은 둘 다 반영합니다

출처: 정부별 R&D 예산 발표·정책 자료, 언론보도 종합 · 예산은 해당 연도 확정예산 기준('27은 정부안)

IGC 공공 R&D 교육 · 정부 R&D 정책

9

01-09

III · 현 정부의 국정기조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지원

국정기조가 과학기술·산업기술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

국정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5대 국정목표 중 R&D와 직결되는 목표 ↑ | 12대 중점 전략과제: 진짜 성장 전략 · AI 3대 강국 도약 · 에너지고속도로 · 5극3특 국가균형성장



과학기술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6~'30)

"과학기술혁신과 AI 대전환으로 모두가 누리는 새로운 성장"

4대 전략: 혁신체계 / AI 대전환 / 기술주도 성장 / 모두의 성장



산업기술

산업 R&D 혁신방안 ('26.1.28, 산업통상부)

"2030년 글로벌 3대 산업기술 강국 도약"

6대 과제: 지역 / M·AX / 산업경쟁력 / 규제완화 / 혁신역량 / 가짜일 버리기

출처: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25.8.13) 보도, KISTEP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설명자료, 산업통상부 「산업 R&D 혁신방안」('26.1.28)

IGC 공공 R&D 교육 · 정부 R&D 정책

10

01-10

Ⅲ · 3대 메가프로젝트 ('26.6.29 대통령실 브리핑 → '27 예산안 반영)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지원

3대 메가프로젝트, 무엇을 하나



3.4조

'27 예산

반도체

초격차 유지

- AI가속기~SW-서비스 국내 생태계
- 수도권·서남권 생산기지
- 반도체 특별회계 2.6조 신설



3.1조

'27 예산

피지컬 AI

올해의 3배 이상

- 제조 명장의 노하우 데이터화
- 8대 분야 현장 실증
- 풀스택 AI 공장 개발



0.5조

'27 예산

AI 데이터센터

국산 AIDC 생태계

- 기가와트(GW)급 데이터센터
- 장비 성능 테스트랩
- 전력·냉각 부품·소재 국산화

3대 메가 + AI 합계 21.3조원 (올해 10.8조의 약 2배) · GPU 5만 장 확보('28) · 민간투자 550조원 유치 목표

출처: 헤럴드경제-물류신문('26.9.1), 글로벌이코노믹('26.7) · 사진: Peellden(CC BY-SA 3.0), Auledas(CC BY-SA 4.0), BalticServers.com(CC BY-SA 3.0) / Wikimedia Commons

IGC 공공 R&D 교육 · 정부 R&D 정책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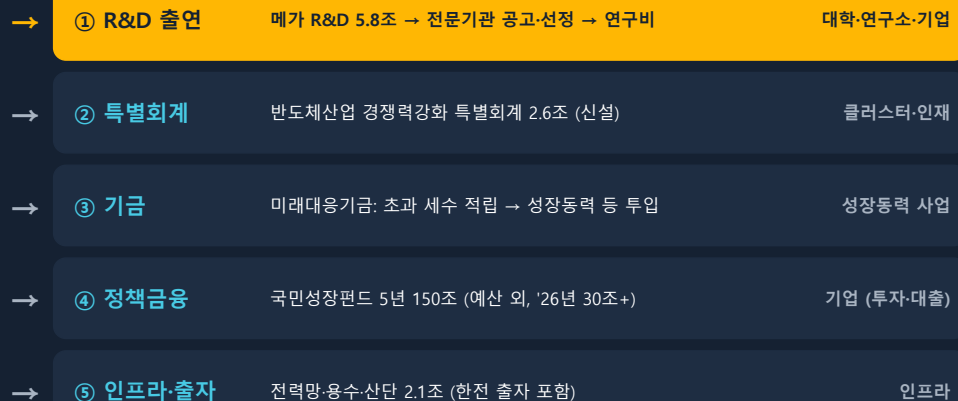
01-11

Ⅲ · 예산은 어떻게 지원·투입되나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지원

21.3조원이 흘러가는 다섯 갈래 — 연구비는 그중 하나

21.3조

3대 메가 + AI
'27 예산안+ 예산 밖
정책금융

▲ 산학협력단이 직접 닿는 길은 ① 하나 → 그래서 다음 파트의 '전문기관'과 'PD'를 알아야 합니다

※ R&D 5.8조는 R&D 예산 기준, 21.3조는 비R&D-AI 서비스 포함 전체 예산 기준 · 출처: 헤럴드경제-SBS Biz('26.9.1), 세계일보('25.12.16)

IGC 공공 R&D 교육 · 정부 R&D 정책

12

01-12

III ·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의미와 시사점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사업이 아니라 '프로젝트'로 — 무엇이 달라졌나

의미

단위의 변화

개별 사업 → 범부처 대형 프로젝트

지원의 변화

R&D + 인프라 + 금융을 한 묶음으로

규모의 변화

미래 성장엔진 예산 51.2조 → 62.8조

IGC 시사점



기회

퍼지컬 AI 8대 분야 실증·첨단바이오 등 대형 컨소시엄에 '글로벌 파트너'로 참여



주의

국회 심의에서 사업 중복·기금 운용 쟁점 제기 → 확정 예산은 달라질 수 있음

IGC 체크 메가프로젝트의 R&D 과제도 결국 전문기관(KEIT 등) 공고로 나옵니다 → 다음 파트

출처: 헤럴드경제('26.9.1) 「3대 메가+AI에 21.3조... 포스트 반도체' 첨단전략 41.4조」

IGC 공공 R&D 교육 · 정부 R&D 정책

13

01-13

IV · 누가 R&D를 움직이나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정부 R&D 추진체계, 다섯 층으로 보기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부처 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해 R&D 관리 업무를 위탁 · 정부 방침: 1부처 1전문기관 원칙

IGC 공공 R&D 교육 · 정부 R&D 정책

14

01-14

IV · QUIZ KEIT는 어느 부처 산하일까?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부처별 연구개발 전문기관 지도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NRF)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TIPA)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IDI)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KIMST)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IPET)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KAIA)**Tip** 공고문의 '공고기관'과 '전문기관'을 보면 어느 부처 사업인지, 누구에게 문의할지 바로 보입니다

* '25.10 정부조직 개편(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른 소관 변경 여부 확인 필요 · 주요 전문기관 예시이며 전체 목록은 아님

IGC 공공 R&D 교육 · 정부 R&D 정책

15

01-15

V · KEIT와 PD 제도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고문 뒤에는 그것을 설계한 사람이 있다

KEIT는



- 산업통상부 산하 준정부기관 (본원 대구)
- 산업부 R&D의 기획부터 성과확산까지 전 주기 수행
- IGC 기획연구 프로그램 수행기관**

PD (Program Director) 제도

- 무엇** 분야별 전문가가 해당 분야 사업의 기획·관리를 책임
- 누가** 산업계 출신 비중 확대 (공개 사례: '15년 32명 중 44%)
- 변화** 기획 중심 → R&D 전 주기 관장으로 역할 확대

IGC와 KEIT의 접점
기획연구 · SEED R&D · 교육 · 네비
게이터 데이('26.7.30)산학협력단 활용법
기술수요조사 · 기획위원 · 공청회로 PD에게 의견 전달

출처: 에너지경제(산업기술 R&D PD 현황, '15), 전자신문(KEIT 원장 인터뷰, '23.9) · 최신 PD 인원 분야는 별도 확인

IGC 공공 R&D 교육 · 정부 R&D 정책

16

01-16

VI · 예산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지원

정부 R&D 예산의 1년 사이클 — 오늘(10.12)은 어디?

▲ 오늘 10.12



2026년에 바뀔 것

- 기획예산처·혁신본부 상설 협의회(월 1회)
- R&D 예타 폐지 → 대형사업 검토 2년 → 3개월



국회 예산 심의 (9.3 ~ 12.2)

아이디어가 공고가 되기까지 1~2년

'26 기술수요조사 → '27 기획·예산요구 → '28 과제 공고

출처: 과학기술기본법·국가재정법상 절차, 세계일보('26.6.26), 파이낸셜뉴스('26.1.12), SBS Biz('26.9.1) · 사진: Cjb8293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IGC 공공 R&D 교육 · 정부 R&D 정책

17

01-17

VII · 정책이 과제가 되는 순간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지원

위기가 오면, 정책 → 예산 → 과제가 몇 달 만에 돈다



얼마나 빨라지나

평상시: 아이디어 → 공고

1~2년 (수요조사 → 기획 → 예산 → 공고)

위기 시: 위기 → 정책 발표

1~2개월

- 소부장 규제 → 대책 35일
- 코로나 첫 확진 → 진단키트 승인 15일
- 요소수 중국 조치 → 경제안보 TF 약 6주

→ 정책 발표 = 다음 공고의 예고편

IGC 공공 R&D 교육 · 정부 R&D 정책

18

01-18

VII · 사례 ① 2019 일본 수출규제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5일 만의 대책 — 소부장 국산화



출처: 뉴스(19.8.5), 뉴스토마토('21.7.1, 산업부 2년 성과), 머니투데이('21.6.28), 다음뉴스('23.2.22) · 사진: Clean room.jpg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IGC 공공 R&D 교육 · 정부 R&D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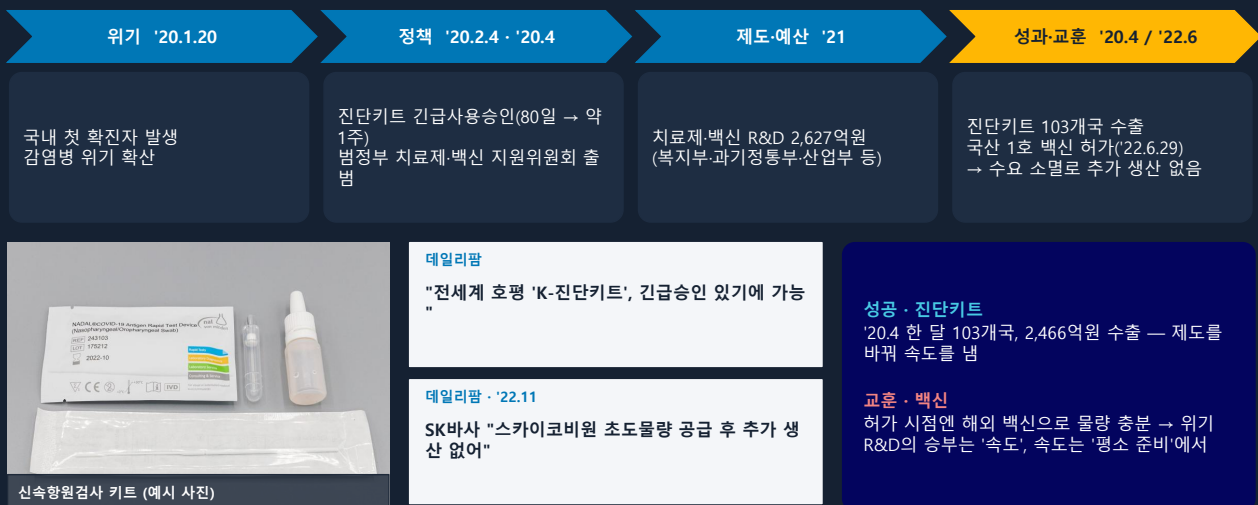
19

01-19

VII · 사례 ② 2020 코로나19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진단키트는 속도로 성공, 백신은 속도를 배웠다



출처: 데일리팝(진단키트 긴급승인, '21.2 치료제·백신 2,627억, '22.6 스카이코비원, '22.11 생산) · 사진: dronepicr / Wikimedia Commons (CC BY 2.0)

IGC 공공 R&D 교육 · 정부 R&D 정책

20

01-20

VII · 사례 ③ 2021 요소수 사태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지원

위기가 제도를 만들고, 제도가 다음 위기를 막았다



출처: 뉴스토마토('21.11), 데일리안('24.6.27), SBS Biz('24.12.19), 뉴스('24.6.18) · 사진: Alexander Noé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IGC 공공 R&D 교육 · 정부 R&D 정책

21

01-21

VII · 세 사례가 말하는 것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지원

그리고 지금, 같은 사이클이 돌고 있다

구분	소부장 ('19)	코로나 ('20)	요소수 ('21)	지금: AI ('26)
위기 → 정책	35일	15일 (진단키트 승인)	약 6주	메가 발표('26.6) → 예산안('26.9)
정책 수단	대책·특별법·추경	긴급승인·범정부위원회	TF·공급망기본법·기금	메가프로젝트·특별회계·펀드
R&D 연결	7년 7.8조원+	'21 2,627억원	핵심기술 R&D 25조+	'27 메가 R&D 5.8조
결과·교훈	대일 의존도 ↓, 지속성 과제	진단키트 성공, 백신은 속도 교훈	다변화로 재발 영향 제한	내년 공고 → 지금 준비



IGC 시사점 정책 발표를 지켜보는 것이 곧 다음 공고를 준비하는 일
대책 발표 → 수요조사·기획 참여 → 컨소시엄 구성까지, 공고보다 먼저 움직이기

IGC 공공 R&D 교육 · 정부 R&D 정책

22

01-22

QUIZ 2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美 DARPA의 과제 성공률은 10%대.
우리나라 국가 R&D 과제의 성공률은?

1 30%대

2 60%대

3 90% 이상

23

01-23

VIII · 연구 현장의 롤 | QUIZ 2 정답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성공률 90%의 역설 → '실패할 자유'를 주다

90%+

한국 국가 R&D
과제 성공률

10%대

美 DARPA-ARPA-H
과제 성공률

거의 다 성공한다 = 처음부터 '안전한' 목표만 잡는다

그래서 바뀐 롤

- 1 평가등급제 폐지
목표달성률 중심 등급 평가 → 과정과 혁신성 중심
- 2 후속과제 연계 ('27~)
목표 미달이어도 의미 있는 과정이면 다음 과제로
- 3 자율성 트랙 확대 ('26.上)
통보만으로 목표·경로 변경, 언제든 중단 요청 (산업부)

단, 자율에는 책임 연구비 부정사용은 더 엄격히 제재 → 오늘 마지막 강의 「연구비 불인정 사용 사례」에서 자세히

출처: 이투데이(한국형 ARPA-H 추진단 인터뷰), 과기정통부 '국가R&D 제도개선 1년'('26.7.1), 산업통상부 「산업 R&D 혁신방안」

IGC 공공 R&D 교육 · 정부 R&D 정책

24

01-24

VIII · 산학협력단 실무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지원

산학협력단 업무,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Before		After
회의비·출장비·재료비	항목별 증빙, 사전 결제	→	'연구혁신비'로 최소 증빙 (직접비 10% 이내)
간접비	쓸 수 있는 항목만 열거 (포지티브)	→	금지 항목 외 허용 (네거티브)
소액 증빙면제 (산업부)	대학만 가능	→	모든 기관으로 확대 ('26.3~)
시스템 로그인	10여 개 시스템 각각 접속	→	'연구24' 단일 로그인 (구축 중)
연구비 관리 시스템	RCMS · 이지바로 분리	→	통합 진행 → IRIS-NTIS까지 통합 ('28 목표)
보고서	분량 제한 없음, 수작업	→	최종보고서 30쪽 이내, IRIS AI 작성 지원 ('27)

"증빙을 챙기는 일" → "좋은 과제를 기획하고 연구자를 돕는 일"

※ 적용 시점·범위는 사업별 협약·지침 확인 필수 — 세부는 이어지는 「규정」, 「연구개발비」 강의에서

출처: 과기정통부 '국가R&D 제도개선 1년'('26.7.1),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산업통상부 「산업 R&D 혁신방안」('26.1.28)

IGC 공공 R&D 교육 · 정부 R&D 정책

25

01-25

VIII · 글로벌 캠퍼스일수록 꼭 챙길 것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지원

연구보안·기술보호: 자율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커진다



과제 보안등급

지금: 보안과제 / 일반과제

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민감과제' 신설로 보안등급 세분화 예정



국가핵심기술 보호

산업기술보호법

정부 R&D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려면 정부 승인 필요



해외 본교와의 공유

데이터·성과·연구자 교류

협약의 보안 조항과 성과 소유를 먼저 확인, 본교 국가 측 규정(외국 연구자금 공개 등)도 함께 점검

실무 팁 기관 연구보안 담당자·절차를 먼저 정하고, 해외 공유 전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에 확인

출처: KISTEP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설명자료('26.7.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IGC 공공 R&D 교육 · 정부 R&D 정책

26

01-26

IX · 그래서 IGC는? | 기회 ① 성장 사다리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IGC의 R&D 성장 사다리 — 이미 첫 계단을 넘었다



인천글로벌캠퍼스(IGC) — 사다리의 출발점

1

IGC SEED R&D

과제당 2천만원 × 20과제
'26.10 선정·협약 → 12월
Demo Day

2

IGC 기획연구

기술수요조사 · 오픈랩 · 네비
게이터 데이
→ 정부 R&D 기획에 아이디어
반영

3

정부 R&D 본사업

전문기관 공고에
컨소시엄으로 참여



첫 성공 사례

한국뉴욕주립대 참여 컨소시엄
산업부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 선정
('26.7)

약 5억원

대학 몫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약 10%)
※ 협약 진행 중

외국대학 캠퍼스도 정부 R&D에 들어갈 수 있
다

출처: IGC 기획연구 프로그램 운영자료(KEIT) · 과제 세부 정보는 협약 완료 후 공개 · 사진: 인천글로벌캠퍼스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IGC 공공 R&D 교육 · 정부 R&D 정책

27

01-27

IX · 그래서 IGC는? | 기회 ② 국제공동 R&D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국제공동 R&D의 문이 더 넓어졌다 —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한국, EU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 참여

28개 팀

우리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팀 ('26.3)
그중 디지털·산업 분야 14개로 최다

첫 선정

준회원국 가입 후 KIST 첫 선정
— 현지 코디네이터의 숨은 설계

//

한국 제안서는 10건 중 9건이 탈락합니다.
가장 큰 약점은 '기대효과'입니다.

— KIST 유럽연구소 코디네이터



IGC의 무기

해외 본교 네트워크 + 한국 캠퍼스
= 한국 R&D와 해외 R&D를 잇는 다리

출처: 헤럴드경제('26.3.23), 다음뉴스('26.7.20) · 사진: Entbert / Wikimedia Commons (CC BY 4.0)

IGC 공공 R&D 교육 · 정부 R&D 정책

28

01-28

IX · 그래서 IGC는? | 기회 ③ 강점 매칭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지원

IGC가 이미 하는 일 × 정부 R&D 키워드

기관	이미 하고 있는 일		연결되는 정부 R&D 키워드
한국뉴욕주립대	인천테크노파크 실증(TRYOUT) 사업 참여	×	제조 AX · 실증
켄트대 글로벌캠퍼스	해조류 바이오소재 공동연구소 (기업 협약)	×	첨단바이오 · 친환경 소재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바이오 의료기기 美 FDA 인허가 지원	×	첨단바이오 · 규제 대응
한국조지메이슨대	혁신창업센터 기반 공동연구·창업	×	사업화 · 투자형 R&D
우리 기관은?	_____	×	_____

마지막 줄은 오늘 저녁 '기관 간 정보교류' 시간에 함께 채워봅시다

출처: 헤럴드경제(26.5.19) 「인천글로벌캠퍼스, 산업 혁신 플랫폼 대전환」 — 입주대학 산학협력 사례

IGC 공공 R&D 교육 · 정부 R&D 정책

29

01-29

IX · 그래서 IGC는? | 준비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지원

정부 R&D 참여 준비도 체크리스트



기관·연구자 정보 등록

IRIS 등 시스템 기관·연구자 정보



간접비 비율 확인

기관 간접비 비율·산정 기준



연구윤리·이해충돌

연구윤리 규정과 검증 절차



연구실 안전관리

안전관리 체계·교육



연구보안 체계

보안 담당자·보안과제 관리 절차



영문 협약·행정 지원

외국인 연구자 대상 서식·안내



성과는 누구 것?

정부 R&D 성과는 원칙적으로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본교의 지식재산권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지 사전 점검

세부는 오늘 오후 「규정의 이해」(전형호 박사) · 「연구개발비의 이해」(전호승 수석) 강의에서

출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산업부 R&D 공통운영요령

IGC 공공 R&D 교육 · 정부 R&D 정책

30

01-30

정리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지원

내일부터 바로 할 수 있는 3가지



1

수요조사·기획에 지금 참여

오늘의 아이디어가
'28년 과제가 된다



2

국제공동 후보 1건 메모

본교와 연계할 수 있는
과제 후보 딱 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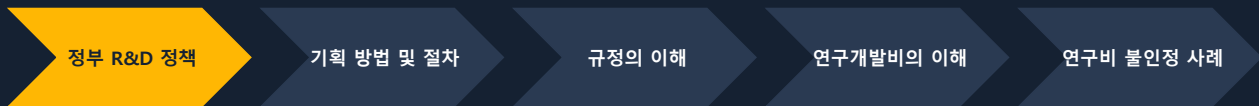


3

준비도 체크리스트 점검

기관 정보·간접비·윤리·
안전·보안·영문 행정

오늘 이어지는 강의



IGC 공공 R&D 교육 · 정부 R&D 정책

31

01-31

CLOSING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지원

정책은 지도, 과제는 여정입니다

오늘 저녁 정보교류 질문

우리 기관의 강점 하나 × 정부 R&D 키워드 하나 = ?

감사합니다

32

01-32

부록 · 교재 배포용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지원

정부 R&D 용어 한 장

용어	뜻	용어	뜻
전문기관	부처가 지정해 R&D 기획·평가·관리를 맡긴 기관 (예: KEIT)	협약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이 맺는 과제 계약
PD	분야별 사업 기획·관리를 책임지는 전문가	주관 / 공동기관	과제를 대표하는 기관 / 함께 수행하는 기관
출연금	정부가 과제에 지원하는 연구비 (값지 않음)	IRIS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공고·접수 관리)
기관부담금	참여 기업 등이 부담하는 현금·현물	연구24	주요 R&D 시스템 단일 로그인 서비스 (구축 중)
직접비 / 간접비	과제에 직접 쓰는 비용 / 기관 공통 운영 비용	배분·조정	혁신본부 부처 R&D 예산을 검토·조정하는 절차
연구혁신비	회의·출장 등에 최소 증빙으로 쓰는 비목	보안과제	보안 관리가 필요한 과제 (민감과제 신설 예정)

02

기획

과제기획 방법 및 절차

과제기획의 논리와 절차, 사업공고문·RFP 해설

일시 1일차 10. 12.(월) 14:25 – 15:00

강의 KEIT 전형호 박사

CONTENTS

I. 과제기획	30
I-1. 정부 R&D 프로세스	30
I-2. 과제기획의 개요	31
I-3. R&D 전략 수립체계	32
I-4.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32
I-5. 과제기획 프로세스	33
I-6. 산업기술 R&D 지원범위	34
II. 사업공고문 및 RFP의 해설	36
II-1. 공고문의 주요구성	37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37
II-3. 과제유형별 RFP 예시	54
II-4. 공고문 관련 FAQ	55

산업기술 R&D 교육

과제기획 방법 및 절차

내일을
기술
바꾸는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02-01

산업기술 R&D 교육

과제기획 방법 및 절차

Contents

- I. 과제기획
- II. 사업공고문 및 RFP의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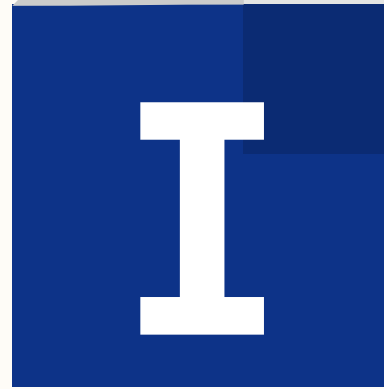
내일을
기술
바꾸는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

02-02

과제기획

1. 정부 R&D 프로세스
2. 과제기획의 개요
3. R&D 전략 수립체계
4.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5. 과제기획 프로세스
6. 산업기술 R&D 지원범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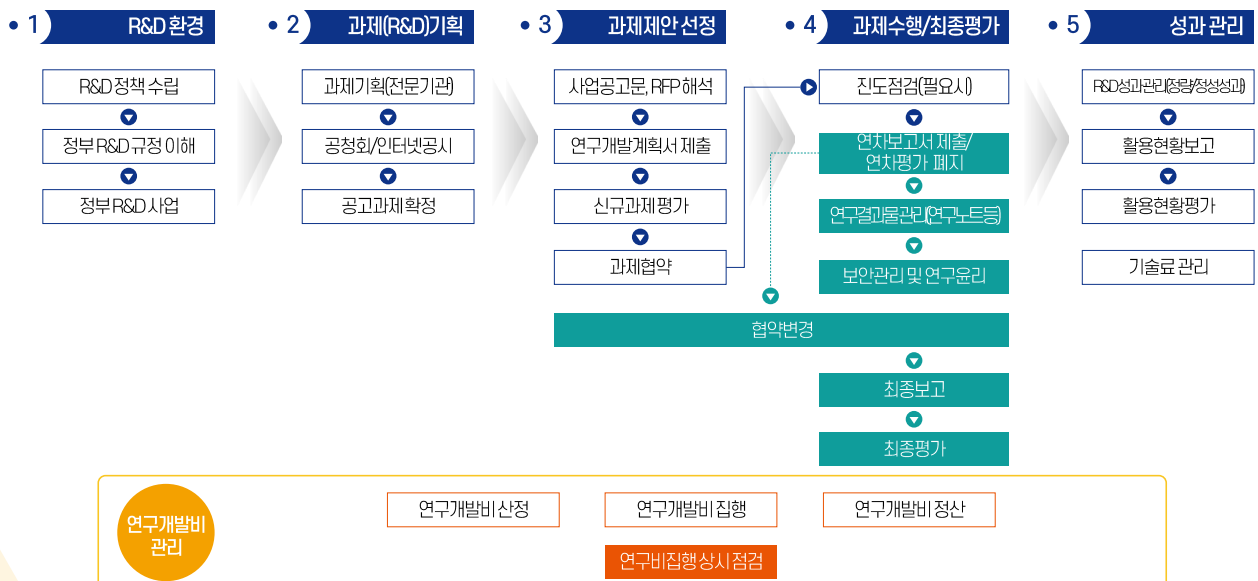
02-03

산업기술 R&D 교육

과제기획 및 신규과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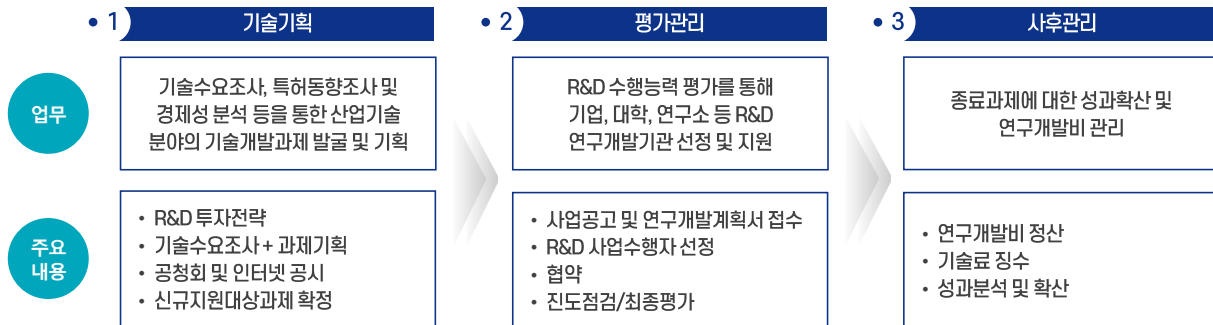
I. 과제기획 | II. 사업광고문 및 RFP의 해설

I -1. 정부 R&D 프로세스



I -1. 정부 R&D 프로세스

KEIT R&D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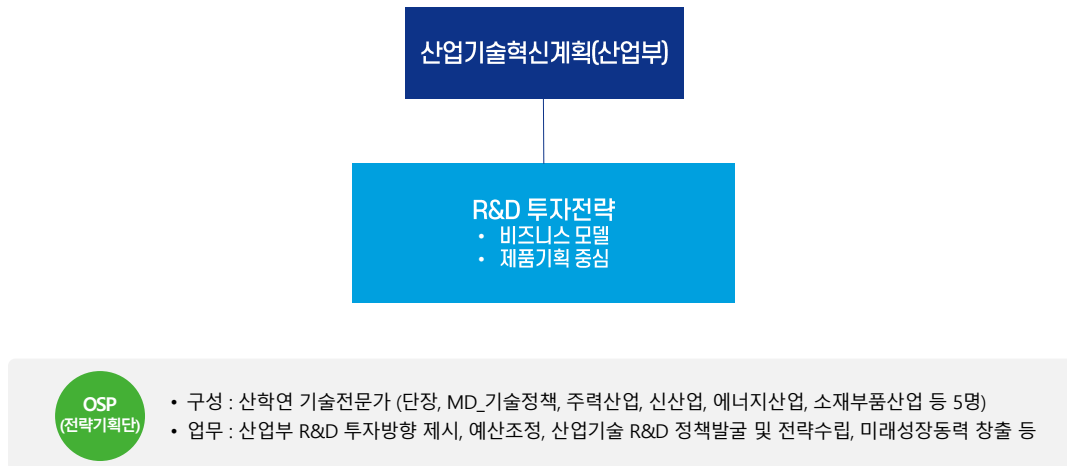
I -2. 과제기획의 개요

정책방향에 의한 **Top-Down 방식**과 산학연의 기술수요를 반영한 **Bottom-Up 방식**의 과제기획 전략을 통해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일련의 과정**

과제기획전략	과제발굴 고려요소
-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 산업기술 투자전략 - 기술수요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 기술수요조사	- 국책성: 정부 R&D정책의 부합성 - 권리성: 개발될 기술의 특허창출, 권리보호 가능성 - 중복성: 기지원 및 기개발된 과제와의 중복정도 - 기술성: 기술우위도 - 시장성: 사업화 경쟁력 - 연계성: 타과제와 시너지 창출정도

I-3. R&D 전략 수립체계

산업기술혁신(5개년)을 주축으로 3년 단위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I-4.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 22대 전략투자분야 285개 핵심테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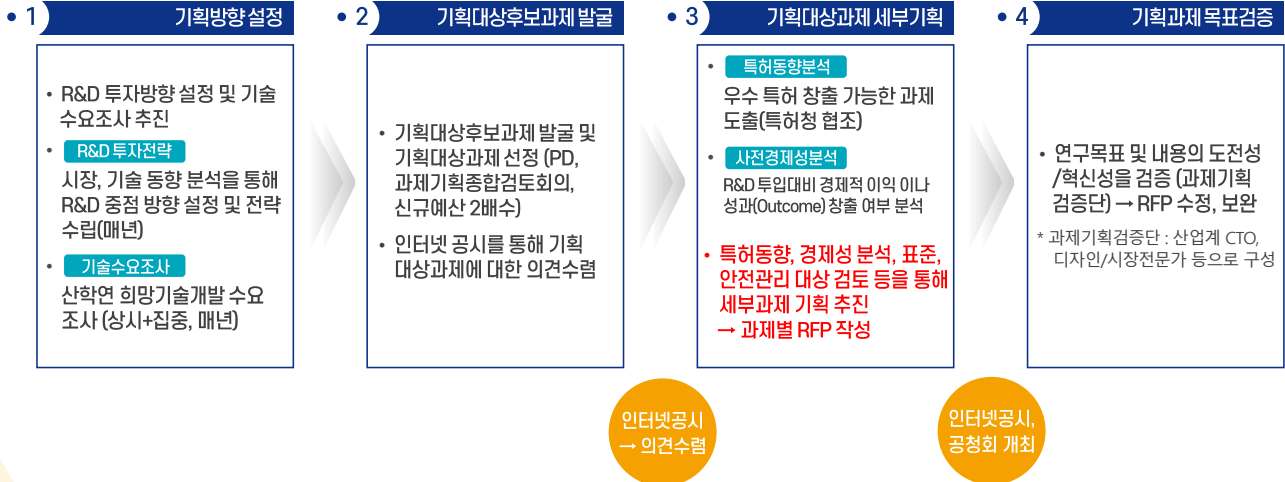
재정투자를 통해 코로나 19가 촉발한 변화들을 우리 산업의 **재도약 기회로 전환 !!**

Vision(비전) → 코로나19 위기의 빠른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의 선제적 준비

추진전략

디지털 전환	▶ DNA 기술혁신에 기반한 제조업 재도약 및 신산업 창출	• [과제1-1] 제조업의 첨단화 및 디지털 생태계로의 전환 • [과제1-2] 경계없는 모빌리티 구현 • [과제1-3]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GVC 재편	▶ 소재부품 기술자립 및 고도화로 미래 공급망 확충	• [과제2] 첨단 소재부품 핵심품목 자립 및 고도화
친환경·저탄소 실현	▶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 위한 친환경 제조·에너지 활용산업 적극 육성	• [과제3-1] 친환경 제조 실현 • [과제3-2] 친환경 에너지활용 확대
K-바이오헬스 고도화	▶ 예방·소비자 중심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역 역량제고 및 국민 건강 보장	• [과제4-1] 빅데이터 기반 의료시스템 구현 • [과제4-2] AI 기반 차세대 의료기기 확보

I -5. 과제기획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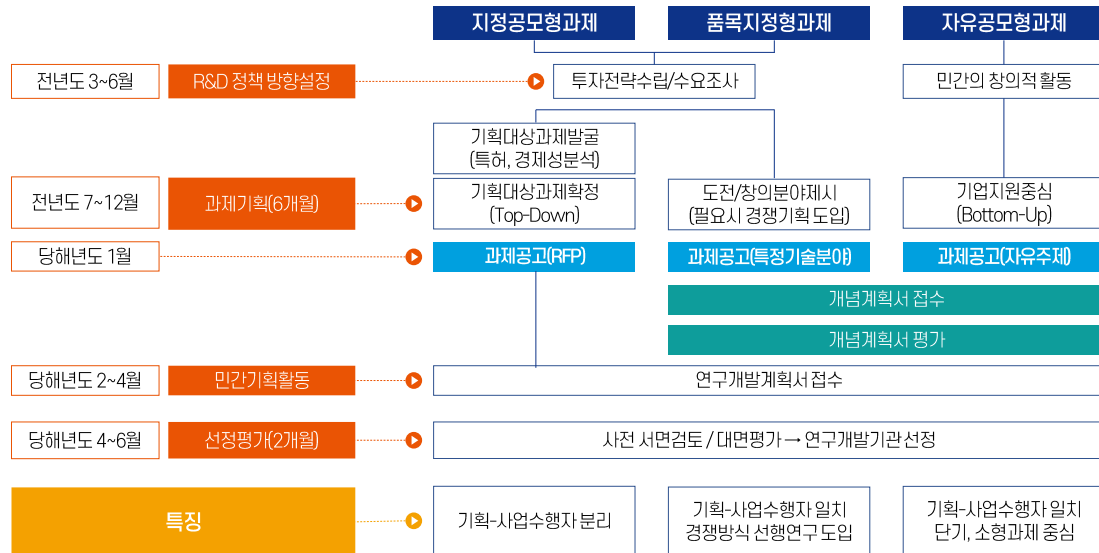


I -5. 과제기획 프로세스

구분	추진절차	세부내용	수행주체
R&D 전략수립	정책방향설정 + 기술수요조사	R&D전략, 기술수준조사, 기술수요조사 결과 등을 검토	산업부 / KEIT
기획대상 과제발굴	과제기획방향검토	기술분야별 기획추진방향 설정 (기술분야간 상호 연계 협력 방안, 표준화, 특허 연계)	과제기획방향검토회의(산업부/KEIT)
	기획대상 후보과제발굴	국책성, 기술성, 시장성 등 정부 R&D정책과 부합하는 후보과제발굴	KEIT
	기획대상과제 선정	기술분야간 중복, 연계성 검토를 통한 기획대상과제 선정	산업부/KEIT
상세과제 기획	기획대상과제 세부기획추진(RFP안 작성)	특허동향, 경제성, 시장성, 안전성 분석 등을 통한 RFP 작성	KEIT
	기획대상과제(RFP) 목표검증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세부내용(중복성, 질적수준 적정성 검토 등)	공청회/인터넷공시과제기획검증단 (산업부/OSP)
	기획대상과제 보완 및 우선순위 도출	RFP 수정보완, 기대성과와 예상위험을 고려한 자원우선순위 도출	KEIT
사전조정 및 확정	신규지원 대상과제 사전조정	후보과제 우선순위 결과 검토 및 지원대상 계획 수립	사전조정회의(산업부/KEIT)
	신규지원 대상과제 심의확정	기술분야별 신규지원 대상 과제 및 예산 등 심의 확정	산업심의회위원회(산업부/KEIT)
공고	신규사업공고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게시	산업부/KEIT

* 정부정책 및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I -5. 과제기획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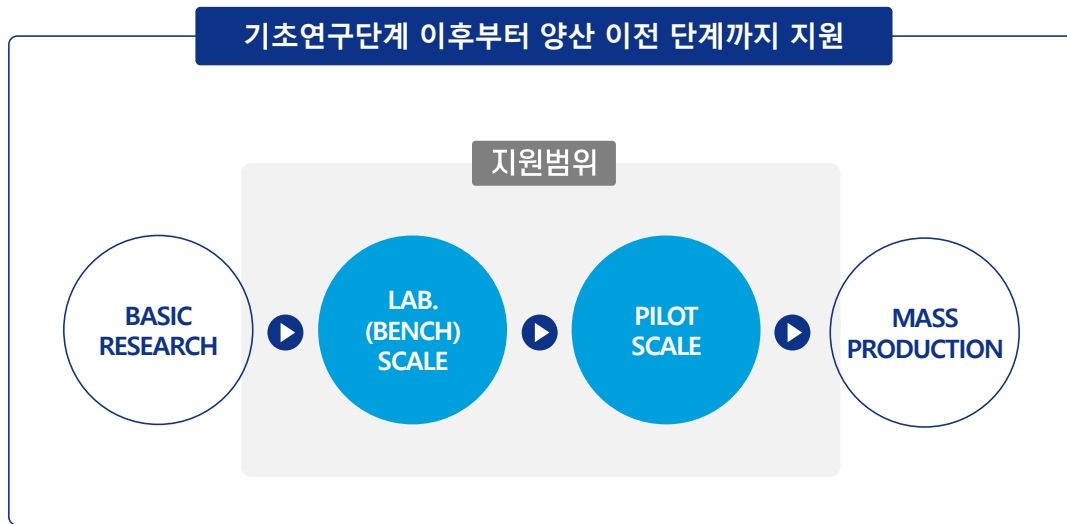


I -6. 산업기술 R&D 지원범위

산업기술 R&D의 포트폴리오 전략과 기술성숙도(TRL)에 따라 과제유형을 ‘원천기술형’과 ‘혁신제품형’으로 구분하고, TRL 2단계~8단계까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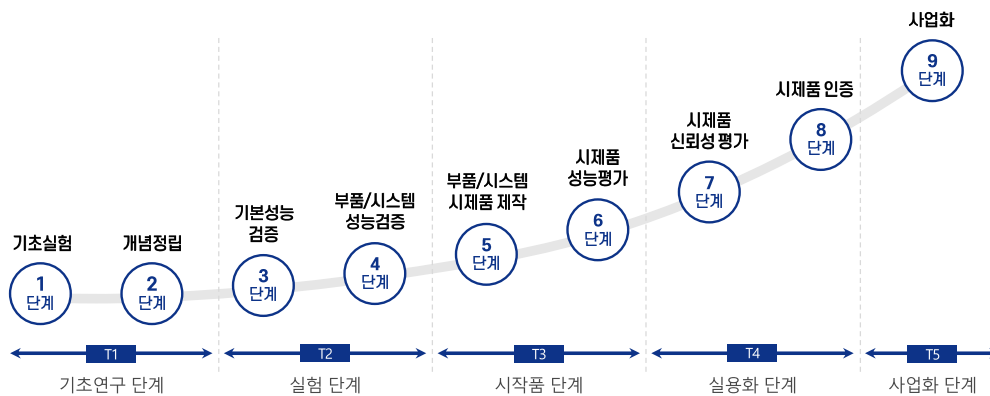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연구개발 최종결과물이 경쟁력 있는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로 도출되는 과제 * R&D 종료가 TRL 5단계 이하	연구개발 최종결과물이 End-Product(시제품) 등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는 과제 * R&D 종료가 TRL 7~8단계

I -6. 산업기술 R&D 지원범위



참고 TRL(기술성숙도, Technology Readiness Level)

- 핵심요소기술의 기술적 성숙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객관적 지표
- 기술성숙도를 9단계(기초실험~사업화)로 구분하여 기술준비도를 측정하는 기준



사업공고문 및 RFP의 해설

1. 공고문의 주요구성
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3. 과제유형별 RFP 예시
4. 공고문 관련 FAQ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용어안내
-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확인 사항

15

02-15

산업기술 R&D 교육

과제기획 및 신규과제 선정

I. 과제기획 II. 사업공고문 및 RFP의 해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21. 1)에 따른 용어 안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하위법령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하위법령 등
사업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주관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주관기관책임자)	연구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자
과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연구개발기관
성과	연구개발성과
사업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전담기관	전문기관
평가위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후보위원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시설·장비비
	재료비

II-1. 공고문의 주요구성

주요 항목	세부 구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일반형, 통합형/병렬형 과제 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분야

지원대상 사업의 기술정책방향에 따라 사업목적 및 지원 대상분야 설명

(예시) 주력산업 생산활동의 기반인 제조장비와 산업용기계 관련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 가치화 도모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사업분야별 예산, 지원대상 과제수, 지원규모, 지원기간을 설명

(예시) 협약기간은 전체 연구개발 기간으로 일괄 협약 원칙

*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1~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음(4년 초과시 단계협약 가능)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1. 사업개요 수행기관의 정의

산업기술혁신사업 내 정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10.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9조(연구개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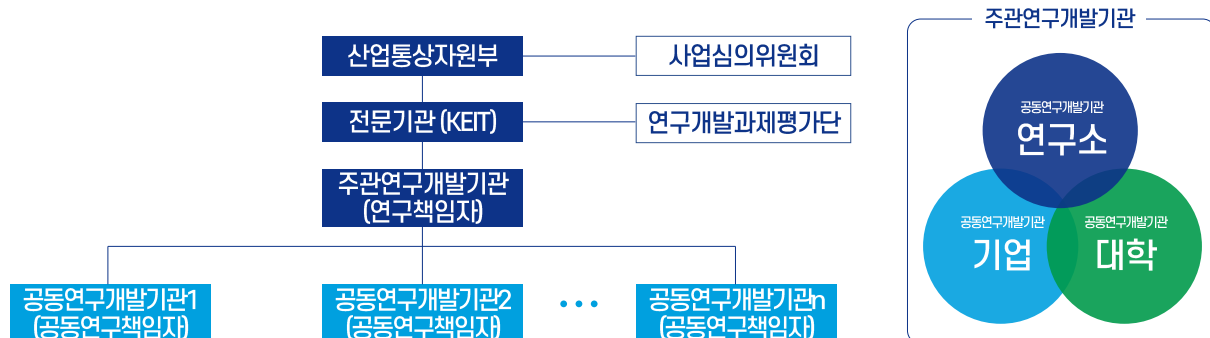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 공통운영요령 제13조 및 제14조를 따른다

용어	정의
산(産)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업체란?) 동일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제도적 단위 또는 경영단위로서,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타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단위(69.4%) ※ 공장등록사업자, 벤처기업,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사업자
학(學)	「고등교육법」, 시행 2014.02.14., 제 2조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7.6%)
연(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07.01., 제 2조(14.9%)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타	사업자단체, 비영리연구법인, 테크노파크 사업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업자(8.5%)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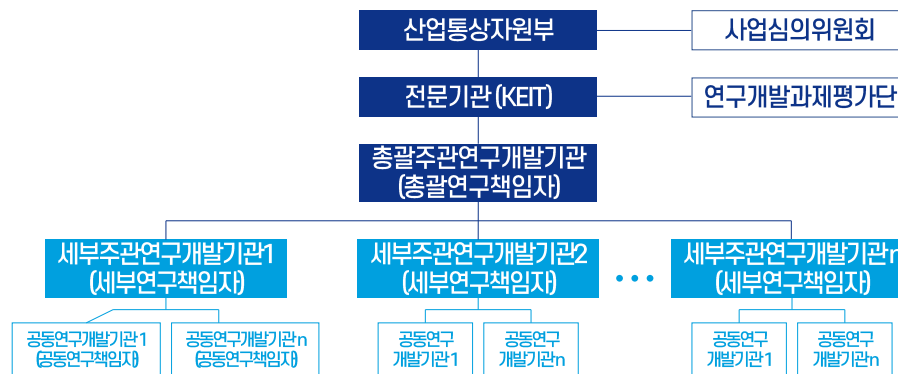
2. 사업추진체계 1)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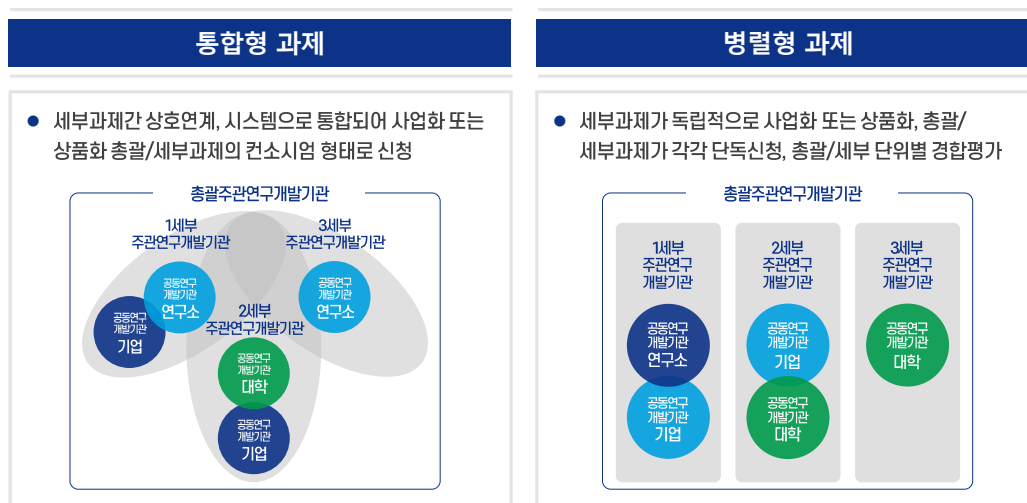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2.사업추진체계 2) 통합형/병렬형 과제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2.사업추진체계 2) 통합형/병렬형 과제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2.사업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포함)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기업포함)
연구책임자	해당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 - 총괄,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 -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과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 수행)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기준 1)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 +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

②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

- 수요기업 :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과제특징(챌린지트랙, 대형통합형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개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중복적용은 불가능)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기준 1)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② 과제유형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민간현금부담 비율 (해당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기준)

연구개발기관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50% 이하	33% 이하	6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50% 이하	50% 이상	
중소기업	75% 이하	67% 이하	40% 이상	
그 외	100% 이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수요기업기업의 경우는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 재산정 필요)
- 대학 및 연구소 및 지방자치단체, 국외기관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 를 적용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기준 1)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민간현금 부담 특례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비율
: 중소기업(80% 이하), 중견기업(혁신제품형 65% 이하)
-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 과제의 경우
 - 정부출연비율: 원천 기술형 과제 기준 적용
 - 민간 현금 부담 비율: 대기업 15% 이상, 중견기업 13%이상, 중소기업 10% 이상 적용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기준 1)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민간현금 부담 특례

- 핵심전략기술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 중소기업 수준 정부출연 및 민간현금 부담
 핵심전략기술이란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 기준.
 - 협약 체결 이후 신청 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 수행 기간 중 '23년 해당 연차만 한시적 적용 (단, 수요기업비적용)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견기업	원천기술	70% 이하	동일	50% 이상	10% 이상	
	혁신제품	50% 이하	65% 이하			
중소기업	원천기술	75% 이하	80% 이하	40% 이상		
	혁신제품	67% 이하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기준 1)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예시) 원천기술형 과제로서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 이내로 지원 컨소시엄
 (대기업 1사, 중견기업 1사, 중소기업 1사, 비영리기관 1기관 참여시)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계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대기업	200백만원(50%)	120백만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60%)	80백만원	200백만원	400백만원
중견기업	200백만원(70%)	43백만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50%)	43백만원	86백만원	286백만원
중소기업	300백만원(75%)	40백만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40%)	60백만원	100백만원	400백만원
수요기업	200백만원(75%)	26.8백만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40%)	40.2백만원	67백만원	267백만원
비영리기관	-	-	100백만원	100백만원	100백만원
합계	1,000백만원	229.8백만원	223.2백만원	453백만원	1,453백만원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기준 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징수 대상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 기관
- 연구개발기관 중 ①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징수 기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징수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직접 실시할 경우	기술료 상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중견기업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중소기업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기술기여도 :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함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기준 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① 최소 편성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기준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

적용 비율

- '23년 신규 사업은 45% 일괄 적용, 계속 사업은 전년 기준 적용
- 사업별 특성을 반영해 ±5%p 범위에서 조정 (공고문에 명시)
- 제외사업 : 실증, 표준인증, 기반구축, 다부처, 인력양성, 정책지원, 국제협력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기준 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②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인력의 인건비(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 채용한 연구원,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
- 사업 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초기 중소기업 인력**
- 지식서비스 분야, S/W 및 설계기술**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인력**
-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에 **파견된 중소기업 인력**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인력 (기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인력** (기준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3년에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에서 현금 계상 가능**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기준 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공고문에
(1)청년채용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추가채용 혜택 적용 사업"
(2)내용이 미포함되어있으면
"추가채용 혜택 미적용 사업" 임

③ 기업의 청년의무채용 기준(산업부 청년채용제도 연장 '23.5.15. 발표)

- 의무채용 폐지, 추가채용 감면혜택을 위한 기준으로만 적용**
 -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 1차년도에 1명 우선 채용**하고, 5억원의 배수를 초과시 마다 1명씩 추가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 (타용도로 전용 불가)
 - 청년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간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불인정**
- (예시) 1개 과제 내 3개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억원인 경우, 의무채용인원 및 시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억	3억	3억	6억	4억	10억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기준 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③ 청년 추가채용시 민간 현금부담 경감 기준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의무채용 외 청년인력 신규채용시 추가 채용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현물로 대체 가능) → 적용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23.5.15 발표)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
- 단, 과제 수행 중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민간현금 추가 납부

(예시) 원천기술형 과제에서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기관이 청년인력 1인(50백만원 기준)을 추가 채용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소계	총계
		민간현금(前)	민간현금(後)	민간현물(前)	민간현물(後)		
중견기업 A	400백만원(70%)	86백만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36백만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21%)	86백만원	136백만원	172백만원	572백만원
중소기업 B	300백만원(75%)	40백만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0백만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0%)	60백만원	100백만원	100백만원	400백만원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기준 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④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⑤ 기타 유의사항

- 여성 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지원 (간접비 계상 인정): 신규 100%, 기존 50%
- 외주 용역비는 3,00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용역 내역 및 금액 필히 명시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1) 지원분야

추진체계	일반형 / 통합형 / 병렬형 : 사업추진체계 참조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유형 -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 유형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 개발 필요 기술과 기술목표(RFP) 제시 -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 - 자유공모형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제안 - 정책지정형 : 정책적 필요성에 의거, 수행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
R&D 자율성트랙	- 일반형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완료) 또는 성과활용 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기관 - 지정형 : RFP에 "R&D 자율성트랙(지정)" 과제로 명시된 과제로 재무건전성, R&D 역량요건을 만족한 기관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참고_R&D 자율성트랙이란?

구분	주요내용	
도입목적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지원내용	- 자율적 최종목표,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 (단, 수요기업 의무참여시 동의 필요)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인정 및 비·세목 간 자유 변경 - 참여연구자 현금인건비 사용(신규여부 불문) - 영리기관 간접비를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인정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비 심의 생략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 9조(R&D 샌드박스 특례) 참조	
신청절차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수시제출(TECH - 연구과제수행 - R&D 자율성트랙 - 신청안내 참조)	
적용기간	R&D 자율성트랙 지정 통보 이후 해당과제의 종료시까지	
신청자격 및 심의기준	일반형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우수 또는 성과활용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기업 및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한 과제, 재무건전성을 심의	지정형 RFP에 "R&D 자율성트랙(지정)" 과제로 명기된 경우, 재무건전성 및 R&D역량 심의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2) 신청자격

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선정평가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요 공동연구개발기관(기업)은 개인사업자이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미보유해도 참여 가능 - 사업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 필히 참고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기타	-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비영리연구법인, 테크노파크 사업자 -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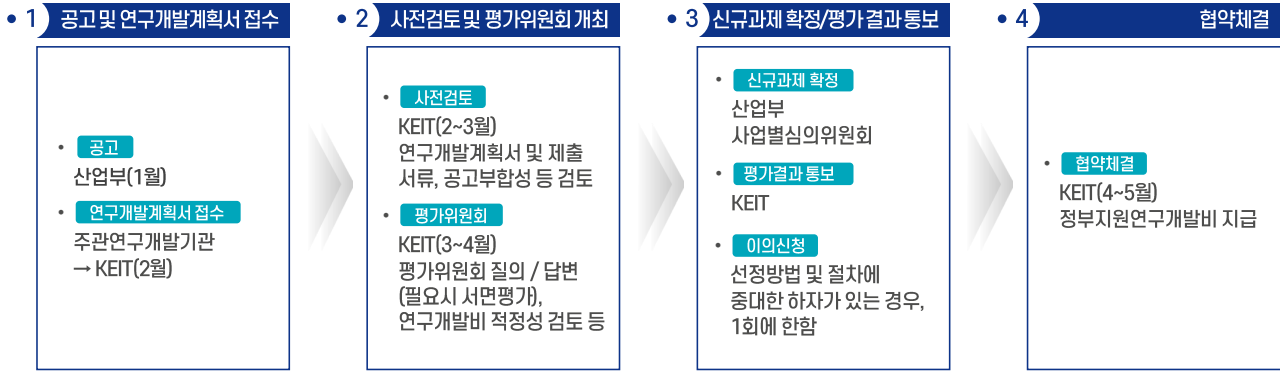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3) 지원제외의 처리기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예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예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연구개발기관,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 - 신용불량, 재무건전성 불량인 경우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 기업부도, 채납처분, 파산 및 회생, 전액자본잠식, 결산 감사 시 "의견거절" 및 부적정 등 - 2년 연속 부채비율 500%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단, 코로나 19로 '23년 신규 과제는 미적용) - 동시수행 과제수를 초과한 경우 (주관기관이 한계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 각 2개, 4개)	- 공고대상과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RFP, 품목) - 개발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 시 - 의무사항 불이행 (보고서 미제출, 기술료 및 현수금, 제재부과금, 정산금 미납 등) - 연구자 최소 인건비계상률(10%) 및 3책 5공 미충족 시 - 안전 관리형 지정 과제의 안전관리계획이 미흡시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소속이 신청 기관과 상이시 - 해당 과제의 기획에 실무책임자(담당PD 포함)이 연구자로 참여시 - 신청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5. 평가절차 및 기준 1) 평가절차



- 상기 일정은 사업 및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 · 심의(사업별심의위원회는 생략될 수 있음)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5. 평가절차 및 기준 2) 평가기준

① 원천기술형(지역적 파급효과 미반영)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기준
기술성(6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50)	정부지원필요성, RFP/품목 부합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10)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윤리,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인프라,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20)	사업화 계획 및 의지(5)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시장분석 및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 타당성
	경제성(15)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 (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5. 평가절차 및 기준 2) 평가기준

① 원천기술형(지역적 파급효과 반영)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기준
기술성(6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50)	정부지원필요성, RFP/품목 부합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10)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윤리,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인프라,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20)	사업화 계획 및 의지(5)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시장분석 및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 타당성
	경제성(10)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 (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적 파급효과(5)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적정성(직간접 고용, 매출 증대, 생산성향상 등)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5. 평가절차 및 기준 2) 평가기준

② 혁신제품형(지역적 파급효과 미반영)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기준
기술성(5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40)	정부지원필요성, RFP/품목 부합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10)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연구책임자 전문성 연구윤리,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인프라,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30)	사업화 실적(15)	연구팀의 과거 사업화 실적 적정성, 과거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적정성
	사업화 계획 및 의지(5)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시장분석 및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 전략의 타당성
	경제성(10)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 (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 (평가점수 산출방식) 위원별 최고와 최저점수 제외 산출평균점수 + 가/감점

※ (지원대상과제 결정)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선정.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5. 평가절차 및 기준 2) 평가기준

② 혁신제품형(지역적 파급효과 반영)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기준
기술성(4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35)	정부지원필요성, RFP/품목 부합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5)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연구역량(2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연구책임자 전문성 연구윤리,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사업화 및 경제성(40)	사업화 실적(15)	연구팀의 과거 사업화 실적 적정성, 과거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적정성
	사업화 계획 및 의지(10)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시장분석 및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 전략의 타당성
	경제성(10)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 (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적 파급효과(5)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적절성(직간접고용, 매출증대, 생산성향상 등)

※ (평가점수 산출방식) 위원별 최고와 최저점수 제외 산술평균점수 + 가/감점

※ (지원대상과제 결정)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선정.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5. 평가절차 및 기준 2) 평가기준(우대배점 삭제)

③ 감점기준

감점기준(예시) : 총 5점 이내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6.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7. 기타 유의사항 1) 신청시 유의사항

- **융합 R&D 과제** :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치창출형(산업고도화, 사회문제해결, 신산업창출)
- **IP R&D 연계 과제** : 특허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특허청 'IP R&D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함)
- **표준 연계 과제** :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과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IEC/JTC1)에 기고발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관련 TC의 COSD기관 등의 컨설팅 비용을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함
- **디자인 연계 과제** :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 필요
- **경쟁형 R&D 과제** :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을 선정·지원할 수 있으며,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수행 1개 과제를 최종 선정
- **복수형 R&D 과제** : 동일 연구개발과제에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이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대형통합형 과제** : 산업생태계 육성과 산업 밸류체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과제**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보안과제에 해당)
-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 다른 항목으로 전용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7. 기타 유의사항 1) 신청시 유의사항

-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선정 과제 중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특허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특허청 'IP R&D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혁신제품형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사업화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연차에 사업화 컨설팅 비용을 계상 가능
-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50% 까지 계상 가능
-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 요구서별로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미응모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 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통합형/병렬형)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7. 기타 유의사항 2)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 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7. 기타 유의사항 3)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7. 기타 유의사항 4)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 · 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5)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II-2. 공고 항목별 세부내용

8. 신청방법, 제출기한, 문의처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제출 불발요)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 접속. 모든 과제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 업로드 완료 후 '제출완료'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 원칙
- 기관/인력 신규가입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 필요
- 개념계획서 통과 과제는 통보 후 30일 이내 본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평가의견서 참고)

제출기한 및 문의처

- 전산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 접수 불가.
- 마감일 접속 과부하 주의 필요
- 문의처 (상세내용은 공고문 참조)
 - RFP / 품목 및 관련 양식 : itech.keit.re.kr
 - RFP 및 품목 기획의도 : 분야별 담당부서
 - 접수절차 및 규정 : R&D상담콜센터 (☎1544-6633)

제출처

- (ITECH)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
- (IRIS)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

II-4. 공고문 관련 FAQ

Q5 1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상한선이 있는데, 2,3,4차년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 1차년도는 상한선 이내에서 작성. 매년 정부 예산 상황 고려,
가급적 연도별 출연금 = (총 정부지원 출연금-1차년도 상한선)/N-1(연차수-1)로 일정하게 산정
(예시) 1차년도 8.5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40억원 이내의 경우 1차년도 8.5억원, 2~4차년도 10.5억원

Q6 공고문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에서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어떤 자료를 참고하면 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나요?

- 과제의 유형과 특성은 공고 상의 첨부자료 세부사업별 RFP 및 품목서의 상단을 확인하면 유형과 특성을 확인 할 수 있음
- 유형과 과제 특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 적용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의 8-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의 작성요령 참고
- 특별하게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면 일반형으로 적용, 유형과 과제특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 적용 가능

Q7 코로나-19 특별지침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개발기간 전체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은 2023.12.31.까지 한시적 적용
- 1차년도 연구기간에만 적용이 가능, 2차년도부터는 해당과제 유형에 부합하는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적용
- 단, 수요기업은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대상이 아님

II-4. 공고문 관련 FAQ

Q8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2021.1.1 부터 시행되었는데, 어느 규정을 참고하여야 하나요?

- 혁신법 시행 이후 산업부 행정규칙 일부 개정 완료.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개정안에 따라 지원 및 관리
다만, 혁신법과 종전의 부처별 행정규칙이 상이 할 경우 혁신법을 우선적용(연구개발비목 계상기준 변경 등)

Q9 연구개발계획서(8-2연구개발비 사용계획, 8-3연구개발비 세부사용계획)에 일부 항목만 기재하는데 서식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 혁신법 시행에 따라, 연구개발비는 개괄적/최소한으로 제출토록 서식을 변경. 요구내역에 대해서만 기재
- 8-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 (1)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황표(1차년도)
- 8-3 연구개발비 세부사용 계획(기관별로 전체기간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역 작성)
- (1) 연구시설·장비 구축(임차) 계획 / (1-1) 연구시설·장비 운영 활용계획
- (2) 연구재료비(시약,재료 등) 구입비
- (3) 연구활동비(인주 용역비) / (3-1) 연구활동비(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 종합관리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그 밖의 비용)
- (4) 간접비(영리기관)

Q10 연구개발계획서(8-3 연구개발비 세부사용 계획)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는 연구활동비 계상 대상인가요?

- 혁신법 시행에 따라, 기존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계상 대상인 소프트웨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는
계상기준이 연구활동비임

II-4. 공고문 관련 FAQ

Q11 기존 통합으로 계상하던 연구시설, 장비비와 연구재료비를 구분하여 연구개발비를 산정하는데 주요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행하는 과제에서 주로 사용하는 항목과 내용을 기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계상

구분	세부항목 및 내용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포함)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보수비, 이전 설치비 포함)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Q12 표준연계와 관련하여 표준화 동향보고서에 제시한 목표를 최종목표에 반영하면 되나요?

- 기타 유의 사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과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IEC/JTC1)에 기고발표하는 것을 원칙(표준화 목표수립*)으로 하며 상세내용은 표준화 과제별 동향 보고서(별첨) 참고
 - 표준동향보고서에 개발내용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표준이 아닌 국가표준으로 제시된 경우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표준개발협력기관지원사업으로 관리하는 표준은 제외하여 목표 수립하여야 함

Q13 표준연계 과제는 표준화 활동 연구개발비 예산을 연도마다 1억원 이내를 의무 편성하여야 하나요?

- 연도가 아닌 전체기간 동안 1억원 이내를 의무 편성 하여야 함

II-4. 공고문 관련 FAQ

Q14 실무작업반(기획위원)은 과제에 참여 가능한가요?

- 공고문의 4-3. 지원제외 처리기준에 따라 해당 과제의 기획에 참여한 실무작업반(기획위원)이 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나, 신청시 유의 필요 (연구개발 전체기간동안 참여 불가)

Q15 결산이 진행 중인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은?

- 과제 신청시에는 2022년도 결산 기준으로 판단. 과제 선정 후, 협약시에는 규정에 따라 회계 결산*을 확인하며 자격 요건을 불충족 하는 경우 지원제외 처리되오니 유의 필요.
 - 단, 신규과제 접수기간 내에 법인체 신고·납부가 완료된 경우는 2021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제출

Q16 국제공동 과제는 국외 소재 연구기관은 공동연구기관인가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인가요?

- 국제공동의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국외 소재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
 - 다만, 해외기관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분류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비용 지급
- 국외기관 참여하는 경우 개발성과물은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되게 하여야 함

II-4. 공고문 관련 FAQ

Q17 통합형 과제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연계된 세부과제에 대한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요?

- 통합형 과제는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및 각 세부과제 전체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임
 - 과제 신청 시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전체(총괄+세부) 컨소시엄이 아닌 단일 총괄 또는 단일 세부과제의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만을 단독 구성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

Q18 수요기업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정의
 - 수요기업으로 신청하더라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닌 일반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판정 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

Q19 수요기업이 다른 참여기업(공급기업)에 로드맵을 제공하는 경우 약서만 제출하면 우대사항에 해당 되나요?

- 해당 가점은 수요기업이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다른 참여기업(공급기업)에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수요기업 약서로 확인) 부여 하도록 기재
 - [신청 서식 제20호] 수요기업 약서를 제출하여 가점 신청 후,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한 로드맵의 가점 해당여부는 신청서류에 대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예정

Q20 R&D 자율성트랙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기관만 신규 과제를 신청 할 수 있나요?

- R&D 자율성트랙은 과제 지원자격이 아니며, R&D 자율성트랙 신청자격이 없는 기관도 신규 과제 신청이 가능
 - 연구개발기관이 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제 수행단계에서 R&D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제도로, 과제 신청자격과 무관

II-4. 공고문 관련 FAQ

Q21 과제 신청 시 R&D 자율성트랙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미 신청 시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 R&D 자율성트랙은 유형(일반·지정)과 상관없이 R&D 샌드박스 신청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선택 사항임. 또한, R&D 자율성트랙은 선정 평가 가점 또는 감점 대상이 아니므로, R&D 샌드박스 신청 여부가 과제의 평가 및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Q22 R&D 자율성트랙 신청자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R&D 자율성트랙(일반)의 신청자격은 “산업기술R&D정보포털(<https://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R&D자율성트랙 > 우수성과이력조회” 메뉴에서 확인가능 (최근 5년간 최종평가 80점 이상 완료) 또는 성과활용평가 ‘우수’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 R&D 자율성트랙(지정)은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음

Q23 과제 신청 시 R&D 자율성트랙 유형을 선택할 수 있나요?

- R&D 자율성트랙 유형(일반·지정)은 과제별로 지정되므로, 신청 기관에서 R&D 자율성트랙 유형을 선택할 수 없음

Q24 공동연구개발기관도 R&D 자율성트랙 적용이 가능한가요?

- R&D 자율성트랙은 과제 단위로 적용되므로,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또한 R&D 자율성트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II-4. 공고문 관련 FAQ

참고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확인 사항

① 코로나19 특별지침 연장(출연금 지원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완화 등)

기존(2020~2022년)	변경(2023년)
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완화 - 중소는 (現)33% → (改)20% - 중견은 (現)50% → (改)35% * 현금부담비중도 중소(기존 40%), 중견기업(기존 50%) 모두 10% 수준으로 완화	계속 적용
② 인건비 현금지원 기업 인건비는 자기부담(현물)이 원칙이나, 코로나 피해기업의 경우 인건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까지 현금 사용 허용	계속 적용
③ 부실위험 미적용 최근 회계연도 말 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미만일 경우 사전지원 제외 미적용	계속 적용

II-4. 공고문 관련 FAQ

참고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확인 사항

② 챌린지트랙형, 대규모통합형, 국제공동형, 서비스형 연구에 인센티브 도입

기존(2020년)

① 과제 유형별 차등 지원

연구개발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현재(2023년)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확대

과제의 유형과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원천기술형 수준으로 지원

연구개발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II-4. 공고문 관련 FAQ

참고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확인 사항

② 챌린지트랙형, 대규모통합형, 국제공동형, 서비스형 연구에 인센티브 도입

기존(2020년)			현재(2023년)		
② 기관 유형별 민간부담 현금 차등 분담			② 민간부담 현금 비중 완화 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형별 민간부담 현금 비중 완화		
연구개발기관 유형	과제 유형		연구개발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60% 이하		중소·중견기업이 아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5%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3% 이하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하	

II-4. 공고문 관련 FAQ

참고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확인 사항

② 챌린지트랙형, 대규모통합형, 국제공동형, 서비스형 연구에 인센티브 도입

기존(2020년)		현재(2023년)	
③ 연구목표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 연구개발비 이월·변경을 '전문기관의 승인'으로 처리 허용하며, 영리기관의 간접비를 10%이내까지 계상 허용		③ (대형 통합형) 연구목표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 연구개발비 이월·변경을 '통보'로 처리 허용하며, 영리기관의 간접비를 20%이내까지 계상 허용	
④ 인건비 현금계상 허용 분야가 많지 않고, 범용성 장비인 PC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인정		④ (서비스 R&D)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를 확대하며, 범용성 장비(PC 등)를 연구개발계획서 상 명시하지 않더라도 구입 허용 * 제조엔지니어링서비스, 제조부가서비스, 제조융합서비스 등	

II-4. 공고문 관련 FAQ

참고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확인 사항

③ 소부장 분야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대·중견기업 민간부담 완화 근거 마련

기존(2020년)			현재(2023년)		
① 과제 유형별 차등 지원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확대 소부장분야 핵심전략기술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출연금 지원 확대		
연구개발기관 유형	과제 유형		연구개발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소·중견기업이 아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II-4. 공고문 관련 FAQ

참고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확인 사항

③ 소부장 분야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대·중견기업 민간부담 완화 근거 마련

기존(2020년)			현재(2023년)		
② 기관 유형별 민간부담 현금 차등 분담			② 민간부담 현금 비중 완화 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형별 민간부담 현금 비중 완화		
연구개발기관 유형	과제 유형		연구개발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및 공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60% 이상		대기업 및 공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II-4. 공고문 관련 FAQ

참고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확인 사항

④ 대기업이 주관하는 과제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완화 혜택 보완('20.10월 국정감사 지적사항)

기존(2021년)	변경(2021년)
① 수요기업 정의 개선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요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님을 명확화	① 수요기업 정의 개선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연구개발기관 * 소부장 R&D는 개발기술의 성격에 따라 대기업이 직접 과제주관기관이자수요기업으로 과제 참여가 불가피하여, 주관기관으로 참여시 수요기업 혜택 적용 제외

⑤ 선정평가 시 동일 평가점수 처리기준 마련

기존(2020년)	변경(2023년)
신설	① 동점과제 처리기준 ②사업화 및 경제성, ③기술성, ④가점 점수가 높은 항목 점수 순으로 선정하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화 *단, 세부사업별로 동점 처리기준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음

II-4. 공고문 관련 FAQ

참고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확인 사항

⑥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으로 인한 일정 지연을 고려해 개념평가 생략

기존(2020년)	현재(2023년)
① 개념 평가 실시 세부사업별 상이하나, 품목공모 과제에 대해서는 개념 평가 실시 후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가능	① 개념 평가 생략 코로나19 등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사업개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개념 평가 생략 후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실시 * (중요) 사업별 공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⑦ R&D 자율성 트랙으로 명칭 변경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기존(2021년)	현재(2023년)
① R&D 샌드박스 기반구축을 제외한 기술개발 수 과제에 대해 R&D 샌드박스를 도입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최종 목표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연구개발비 이월,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영리기관 간접비를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사용 가능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① R&D 자율성트랙 '일반' 유형 동일, '지정' 유형 지원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중 : 선정기준 완화, 대상사업 확대, 접수기간 조정(5월 이후~)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최종 목표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영리기관 간접비를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사용 가능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II-4. 공고문 관련 FAQ

참고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확인 사항

⑧ 청년채용제도 개선사항 안내(산업부 청년채용제도 연장('23.5.15) 발표)

기존(2022년)	현재(2023년)
① 의무채용 미유지 패널티 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및 의무채용 미유지 시 현금인건비 불인정	① 의무채용 미유지 패널티 삭제 및 청년고용 혜택은 유지·확대 의무채용 → 기본채용(용어변경, 5억원 당 1명 기준동일) 추가채용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과제에서만 기본채용 우선달성 필요
② 중소중견기업 추가채용 시 기업 현금부담 감면 청년 추가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면	② 추가채용 혜택 적용대상 확대(대기업까지 혜택) 청년 추가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면 기준은 동일

질문과 답변

03

규정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혁신법 체계와 부처 규정, R&D 프로세스별 주요 규정

일시 1일차 10. 12.(월) 15:10 – 15:30

강의 KEIT 전형호 박사

CONTENTS

I. 산업기술 R&D 규정	66
01.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체계	66
02.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구성	68
II.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관련 규정	69
01.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69
02. 프로세스별 주요규정	71
산업기술 R&D 사업 요약	87

산업기술R&D교육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Korea Planning &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03-01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CONTENTS

I 산업기술 R&D 규정

II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관련규정

03-02

I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산업기술 R&D 규정

01 _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체계

02 _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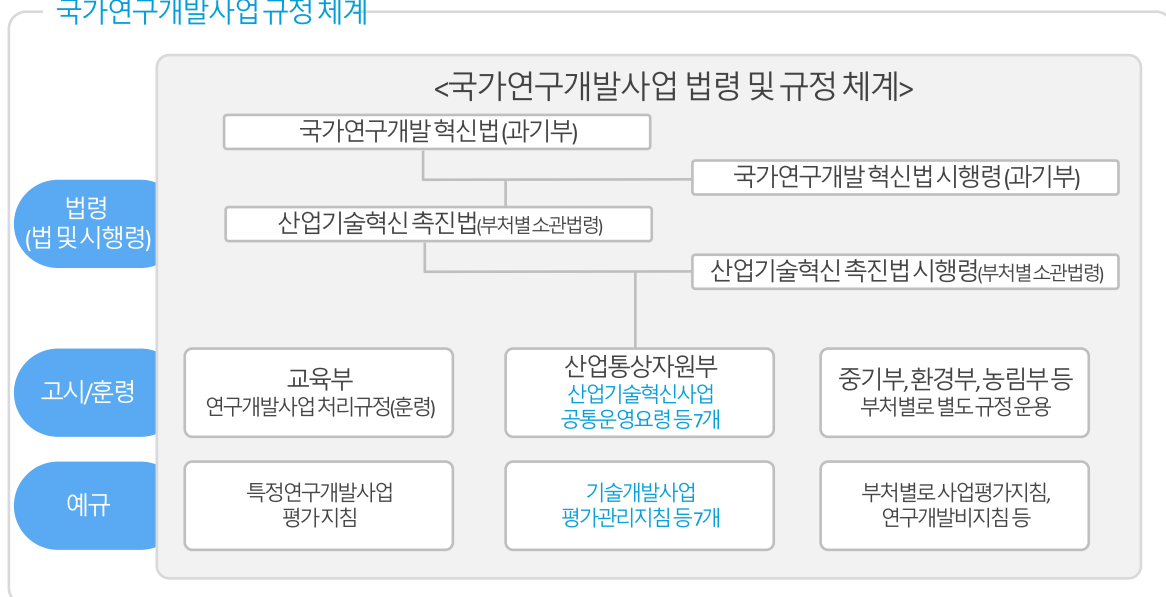
I 산업기술R&D 규정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01 _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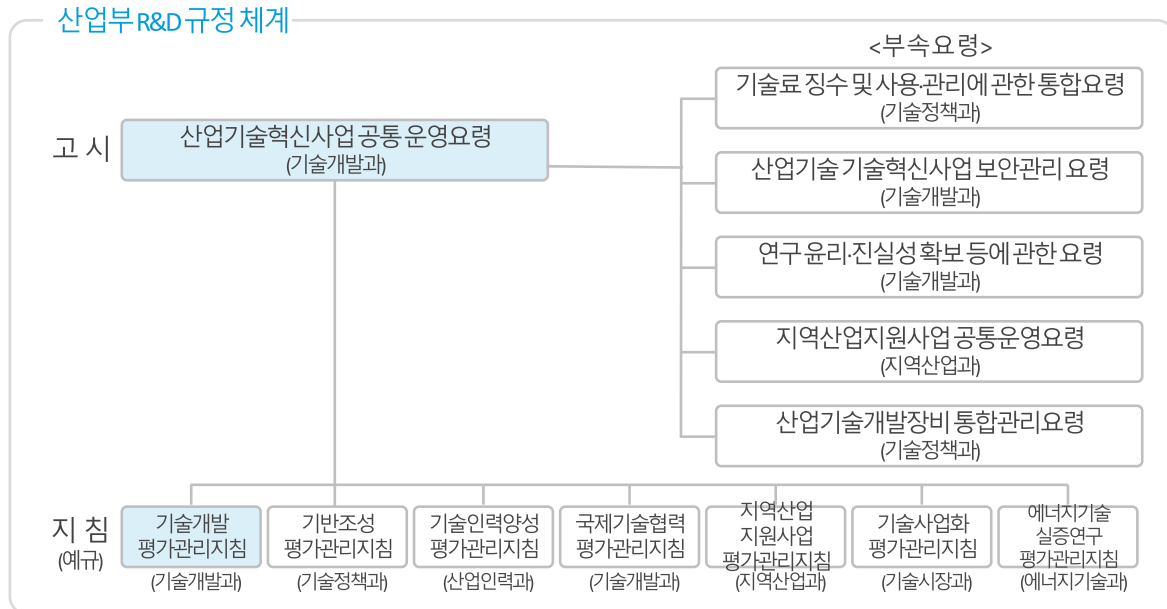
가)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체계의 이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체계



01 _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체계

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운영요령 체계



01 _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체계

다 R&D 사업 관련 규정 해석과 적용

1. 규정은 산업기술 R&D 사업의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것임

- 개별 사업의 특성은 사업 공고문(고시)에 반영하여 적용

2. 규정이 개정되면 일반적으로 기존 과제도 적용 받음

-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 이전에 기 협약한 과제도 시행일 이후부터는 개정 내용을 적용 (단, 규정 부칙의 적용례에서 언급한 사항은 예외)

예)“이 요령 시행 후 협약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신규협약 과제부터 적용

예)“이 요령 시행 후 신규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진행 중인 과제 미적용

02 _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구성

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총칙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사업의 추진체계	전략기획단, 사업별 심의위원회, 산업 R&D 조정위원회, 기술개발투자관리자, PD 등 전문기관,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장비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등
사업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분류체계, 사업별 지원분야발굴, 과제기획, 시행계획의 공고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사업의 신청, 선정평가,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연구개발비의 산정	연구개발비 계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02 _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구성

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의 관리·사용	협약의 체결, 협약체결의 중지, 협약의 변경, 협약의 해약,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정산	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진도점검,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평가 및 이의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연구개발기관 교육, 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실시계약의 체결, 사업 정보의 관리,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종합성과분석, 사업 보안, 연구윤리의 확보,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보칙	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포상 등, 부속요령의 제정·운용, 평가관리지침의 제정·운용, 적용 특례, 위탁 업무 및 수탁자, 재검토 기한 등

II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관련 규정

01 _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02 _ 프로세스별 주요 규정

산업기술R&D교육_실무과정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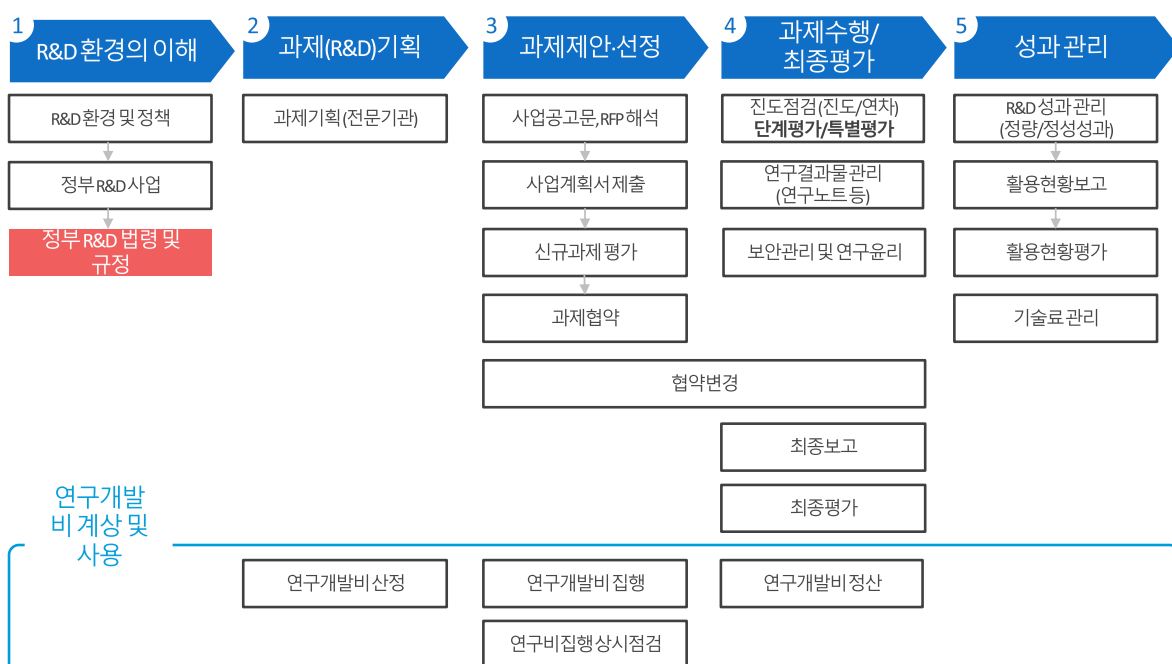
03-09

II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관련 규정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01 _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1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산업기술R&D교육_실무과정

10

© 2024. KEIT. All rights reserved

0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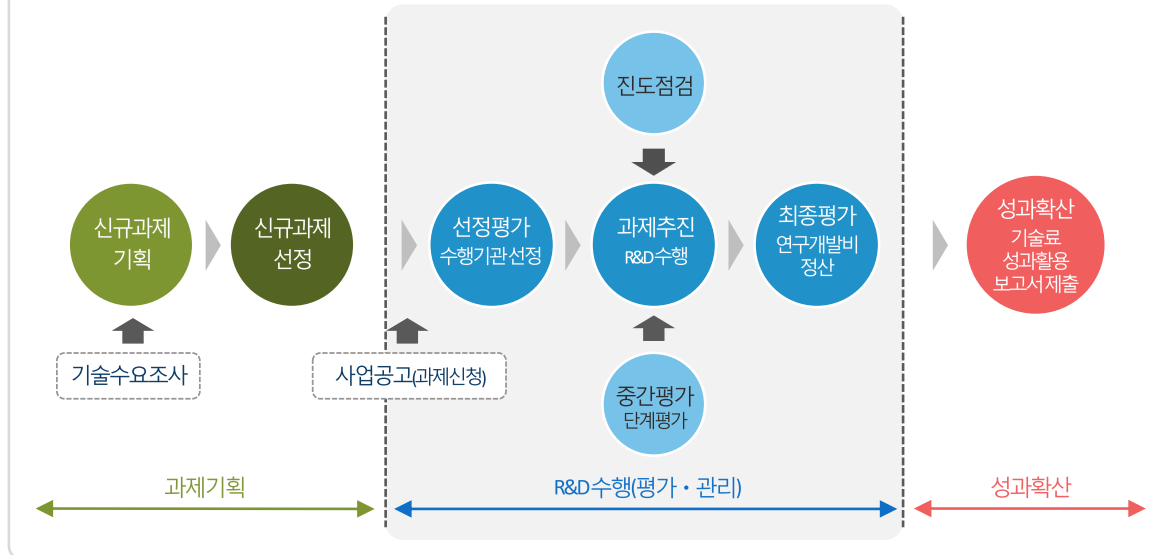
II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관련 규정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01 _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1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기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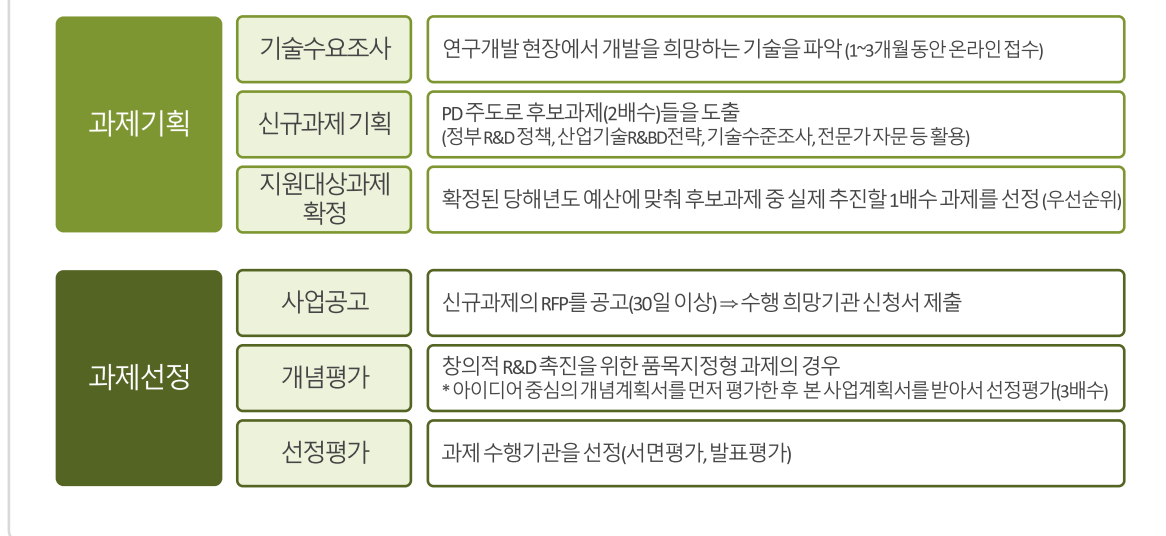
II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관련 규정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01 _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1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기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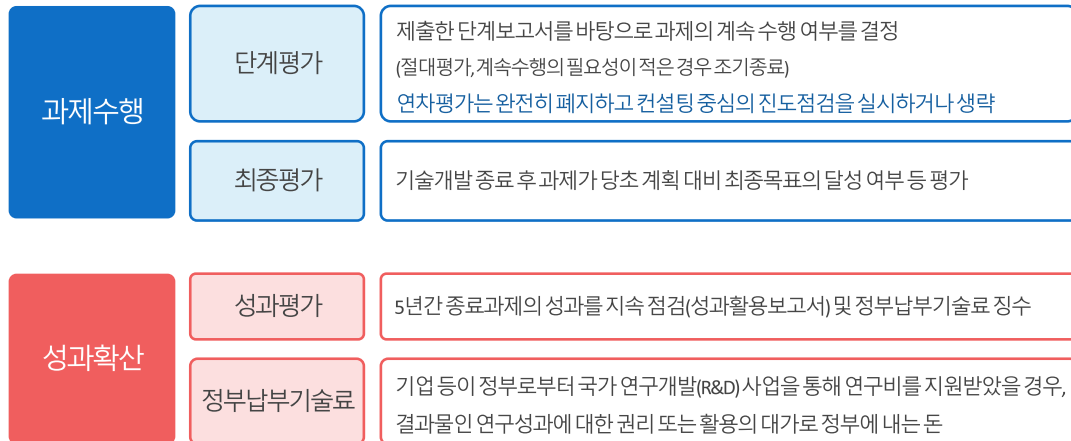
II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관련 규정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01 _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1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기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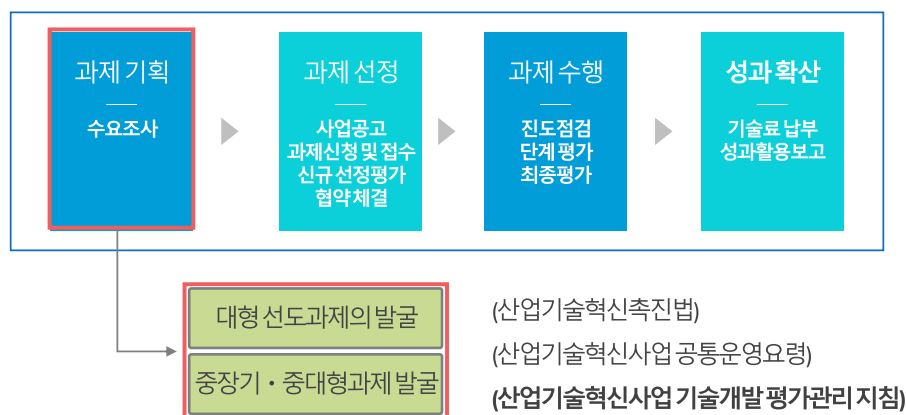


II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관련 규정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02 _ 프로세스별 주요규정

2 수요조사(과제기획)



II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관련 규정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02 _ 프로세스별 주요 규정

2 수요조사(과제기획)

지원과제의 발굴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의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정기 또는 상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술개발과제 발굴

기획대상 후보과제 발굴

기술로드맵, 기술 및 시장 동향, 기술수요 조사 등의 사전기획 결과를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 발굴

기획대상과제 확정

발굴된 후보과제를 바탕으로, 예산의 규모, 기술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분야별 기획대상과제 선정

과제기획 수행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기술분야별 선행특허·표준화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과제기획 실시

II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관련 규정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02 _ 프로세스별 주요 규정

2 수요조사(과제기획)

지원과제의 발굴

과제기획 검증 및 우선순위 도출

- 과제기획 수행기간 중 과제기획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

- PD의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과제별 목표 검토 및 검증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목표검증단을 구성·운영

-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획과제의

지원대상과제 심의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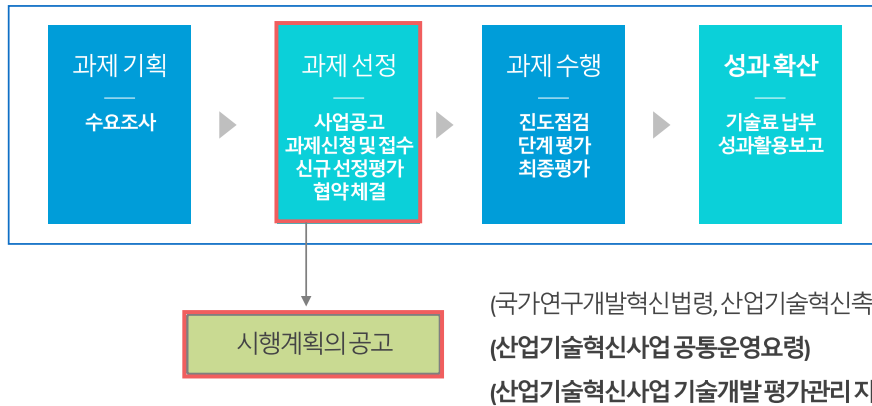
-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목표검증단의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과제 심의 확정

- 사업별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조정회의를 개최하여 MD/PD/기획위원회의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에 과제별 예산 배분(안) 등을 사전에 검토 및 조정

02 _ 프로세스별 주요 규정

3 사업 공고



02 _ 프로세스별 주요 규정

3 사업 공고

시행계획의 공고 [공통운영요령제19조]

장관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등을 위해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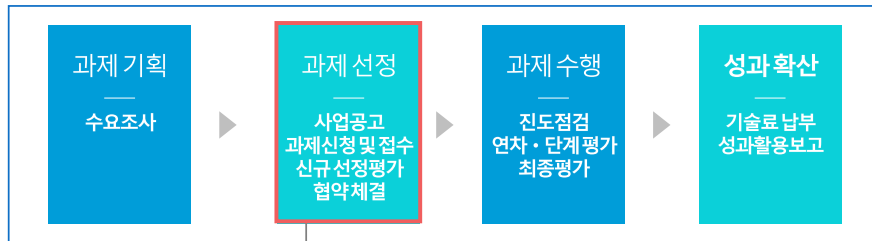
- 지원대상분야,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사업 추진체계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 평가 절차 및 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 근거법령 및 규정
- 신청 방법 및 기한 등

공고기한

-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02 _ 프로세스별 주요규정

4-1 과제신청 및 접수



사업신청 및 접수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

02 _ 프로세스별 주요규정

4-1 과제신청 및 접수

가) 사업의 신청 [공통운영요령제20조]

- 총인건비계상률(구 참여율): 10% 이상
- 연구자별 동시수행과제 수(3책5공): 5개 이내 (연구책임자의 경우 3개 이내)
 - 동시수행 제외 과제
 - ① 사업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
 - ② 조사·기획·평가 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 관련 과제
 - ③ 총괄과제, 경쟁형 R&D 과제, 기타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등
- 중소중견기업 별 동시수행 과제 수(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제한없음	4
중소기업	제한없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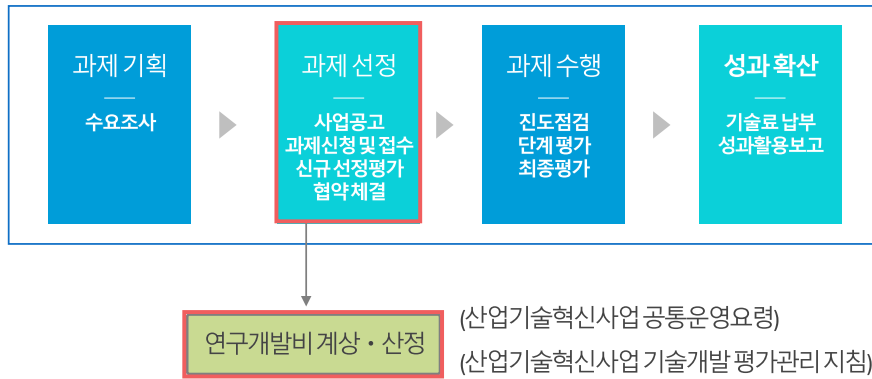
* 한계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 1 미만인 기업

II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관련 규정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02 _ 프로세스별 주요규정

4-2 연구개발비 계상/산정



II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관련 규정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_ 프로세스별 주요규정

4-2 연구개발비 계상/산정

나) 연구개발비 계상 [공통운영요령제 23조]

비목	세목	현금
직접비	인건비	• 해당과제에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
	학생인건비	• 해당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박사 후 연구원 포함)에게 지급
	연구시설 및 장비비	•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경비,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매입·조성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등
	재료비	• 시약 및 재료의 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연구활동비	• 국외 출장,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교육훈련비 • 과제에 직접 활용되는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비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 전문가 활용비, 도서구입비, 세미나 참가비 • 컨설팅비용(디자인, 사업화 전략 등) • 세부과제 관리비 등 •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연구실환경유지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식대 등
	연구수당	•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간접비		• 인력지원비: 장비 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개발능력성과금,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등 • 연구지원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완관리비 등 • 성과활용에 관한 경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II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02 _프로세스별 주요규정

4-2 연구개발비 계상/산정

다)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출연금)의 지원기준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공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공통운영요령 제25조]의 현금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공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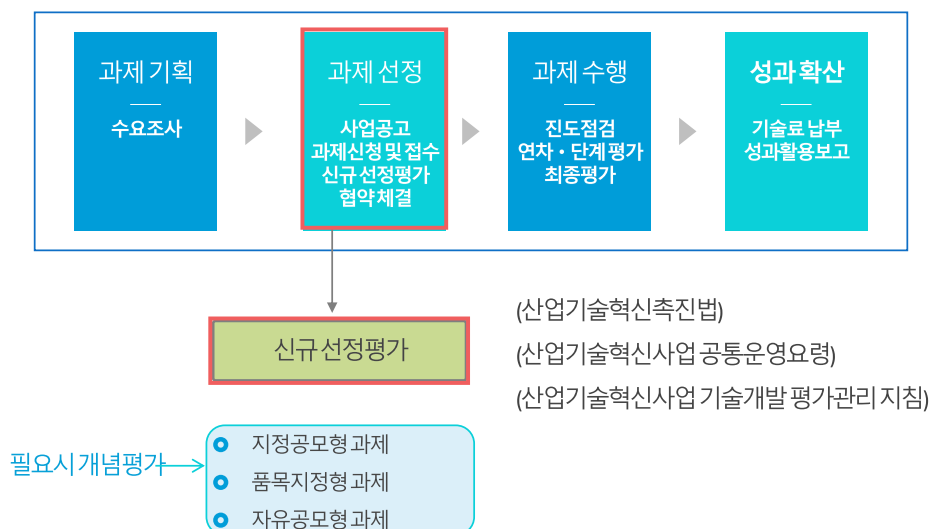
II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관련 규정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02 _프로세스별 주요규정

5 신규 선정 평가

<산업기술혁신사업 '신규 선정평가'의 이해>



02 _ 프로세스별 주요규정

5 신규 선정 평가

가) 개념평가 [공통운영요령 제16조]

- 대상 : 자유공모 또는 품목공고 시 실시
- 개념계획서를 5페이지 내외로 간략히 제출
- 핵심 아이디어의 혁신성·차별성 위주로 간략히 작성
- 선정 대상과제 수의 3배수를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선정

02 _ 프로세스별 주요규정

5 신규 선정 평가

나) 사업계획서 평가 [공통운영요령 제21조]

신청자격검토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 기개발 지원 과제와 중복성
- 국가과학 기술지식정보 서비스 (<http://www.ntis.go.kr>)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참여제한여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 3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
- 참여 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과제 수
-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과제 수 등

선정평가 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능력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연구개발기관의 관리·지원능력, 연구윤리 수준 등 포함)
-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방법·전략·체계 및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분담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
-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및 연구개발기간의 타당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II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관련 규정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02 _ 프로세스별 주요 규정

5 신규 선정 평가

다) 우대 및 감점 기준 [평가관리지침 제18조]

| 우대사항

- 산업부 사업에서는 전면 폐지

| 감점기준

- 최근 3년 이내에 부정행위로 인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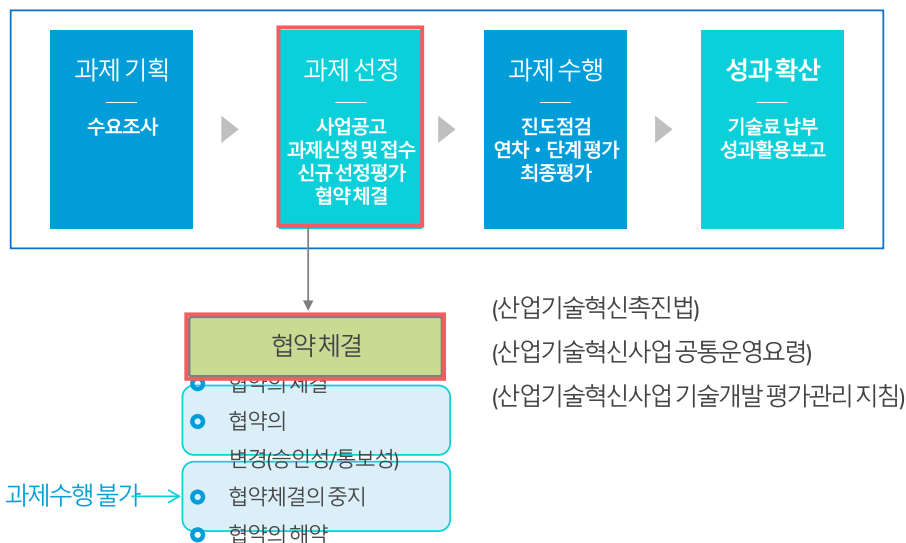
II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관련 규정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02 _ 프로세스별 주요 규정

6 협약체결 · 중지 · 변경 · 해약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의 협약 관련 개념>



프로세스별 주요규정

6 협약체결 · 중지 · 변경 · 해약

가) 협약의 체결 [공통운영요령 제26조]

- 선정통보 후 30일 이내 협약체결
- 협약 내용
 1. 연구개발과제명, 협약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와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 일괄/단계협약 체결

나) 협약의 준비 [평가관리지침 제28조]

- 협약 준비 사항
 1.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입금
 2. 신규인력채용 확인서
 3. 사업/창업 초기 증빙 서류 (기존인력의 인건비 지원 가능)

02 프로세스별 주요규정

6 협약체결 · 중지 · 변경 · 해약

다) 협약의 변경 [공통운영요령 제27조]

- 협약 변경 승인요청은 승인성 변경 및 통보성 변경으로 구분

	승인성	통보성
개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문기관에게 승인요청 ⇒ 변경시 전문기관의 승인필요 단, 정책지원연구개발과제등의주관연구개발기관및최종목표의변경의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아닌 주관의 승인을 거쳐야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문기관에 문서로 통보 단, 사업시스템이 구축된 전문기관의 경우 전산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통보를 갈음
기간	전문기관이 아닌 주관의 승인을 거쳐야함	즉시
신청절차	주관 기관장 → 변경승인요청 → 전문 기관장 → 결과통보 → 주관 기관장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주관 기관장 → 통보(공문/전산시스템변경신청입력) → 전문 기관장
해당사항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목표,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의 변경 ②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비 총액의 변경 ③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연구수당, 간접비 증액 ④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및 연구시설의 변경 ⑤ 단계별 연구개발비 이월 ⑥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한 장비를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② 참여연구원 및 인건비계상율의 변경 ③ 총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내의 연구책임자 변경 ④ 연구개발비 계좌의 변경

02 _ 프로세스별 주요규정

6 협약체결 · 중지 · 변경 · 해약

라) 협약의 해약 [공통운영요령 제28조]

- 과제의 내용이 기 수행 되었거나 중복되는 경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미부담,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
- 연구개발비의 횡령, 편취 등 목적외 용도로 사용
-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지연 또는 중지되어 소기의 성과를 내기 곤란한 경우
-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가 타 과제에서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 기타 사항 (연구부정행위, 보안위반 등)

마)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공통운영요령제29조]

-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일시 또는 분할 지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입금 후 출연금을 지급

02 _ 프로세스별 주요규정

6 협약체결 · 중지 · 변경 · 해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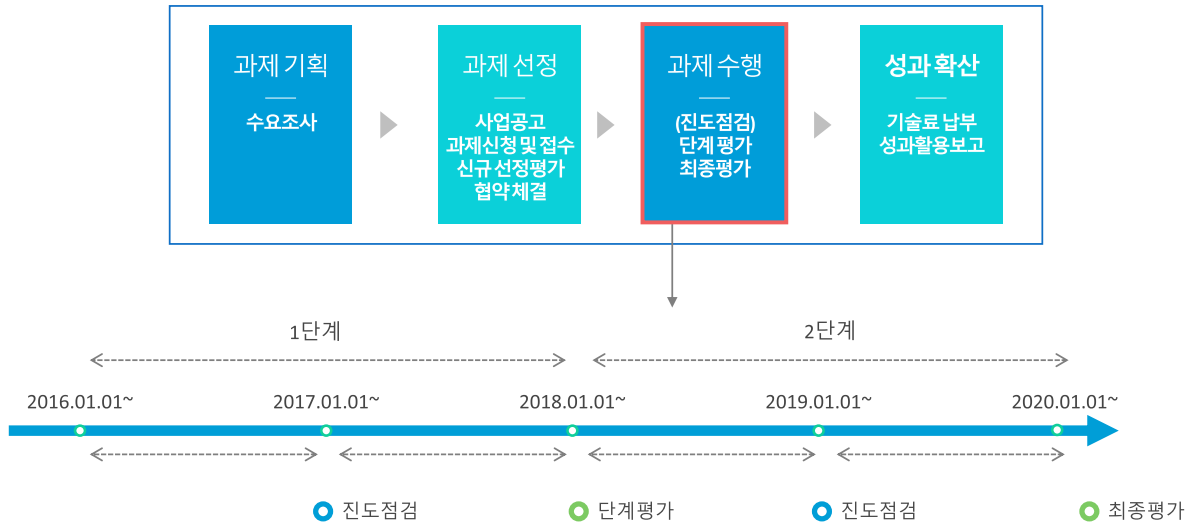
바)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공통운영요령30조]

-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
 - 별도의 통장 및 계정(신규통장 불필요)
- 10개 이상 과제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은 하나의 통장을 사용가능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연구개발비를 관리
 - 세부사항은 연구개발비 요령에 따름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을 RCMS 운영기관으로 지정
 - 실시간 통합 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02 _ 프로세스별 주요 규정

7 과제진행 및 결과보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진행 및 결과보고 개념>



02 _ 프로세스별 주요 규정

7 과제진행 및 결과보고

가) 진도점검 [평가관리지침 제36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도입으로 기존의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진도점검으로 전환
- 해당연도 과제 종료일 30일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제출
- 진도점검 결과는 '계속' 또는 '평가대상'으로 판정
- 진도점검 방법은 사전검토 후 서면검토/실태조사/특별평가 중 선택

II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관련 규정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02 _ 프로세스별 주요규정

7 과제진행 및 결과보고

나) 단계평가 [평가관리지침 제38조]

- 해당 단계 종료일 30일 전까지 단계보고서 및 차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
- 보고서 점검, 면담 또는 현장실태조사 후 단계평가위원회를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우수, 보통)**”로 판정
- 평가기준은 해당단계의 목표달성 및 다음단계 계획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평가
- 절대평가가 원칙이나 연구개발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 상대평가 가능
- 단계평가 결과 “조기종료(우수, 보통)”로 평가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제출 및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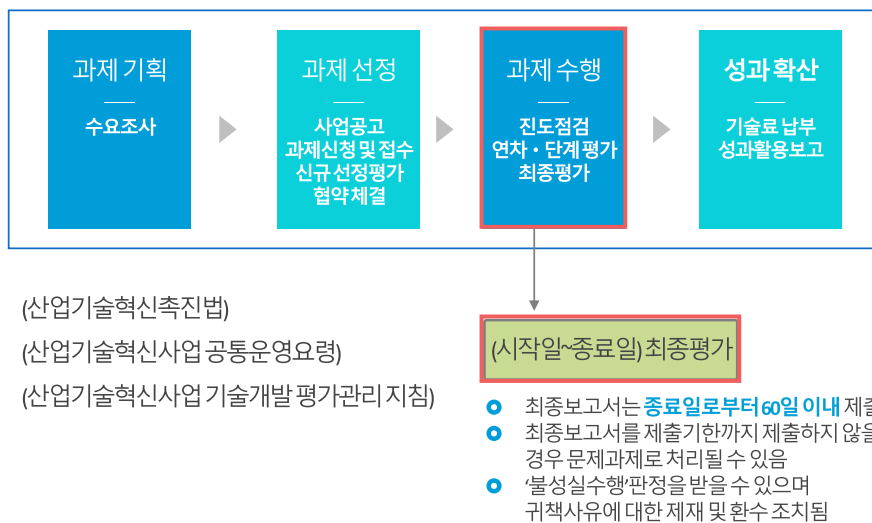
II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관련 규정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02 _ 프로세스별 주요규정

7 과제진행 및 결과보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의 최종평가 관련 개념>



02 _ 프로세스별 주요 규정

7 과제진행 및 결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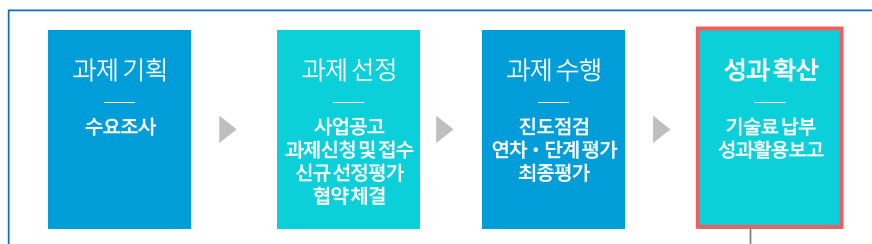
라) 최종평가 [평가관리지침 제39조]

- 최종 년도 **과제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
- 최종보고서,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우수**”, “**보통**”, “**미흡**”, “**불성실수행**”으로 판정
- 평가기준은 목표달성도, 기술성, 경제성 및 사업성을 중심으로 평가

02 _ 프로세스별 주요 규정

8 사후관리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결과물의 귀속 · 소유의 개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개발결과물(성과물)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물은 연구자로부터 승계하여 **연구개발한 기관의 소유**
- 성과의 유형, 과제참여유형 및 비중 등에 따라 연구자 소유나 여러 기관의 공동 소유 가능
-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소유로 할 수 있음

02 _ 프로세스별 주요규정

8 사후관리

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공통운영요령 제34조]

- 해당단계 과제수행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 위탁정산기관(회계법인)에서 정산업무를 수행
- 집행잔액, 부당집행금액의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을 회수

나) 성과물의 귀속 [공통운영요령 제35조]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기관 간 협의
-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유·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절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수행기간 중에 임의처분 불가함

02 _ 프로세스별 주요규정

8 사후관리

다) 장비 통합관리 [공통운영요령 제31조]

- 3천만원 이상 구입장비는 중앙장비 심의위원회 심의(1억원 이상은 과기부 심의)
- 심의를 거친 장비는 i-Tube에 등록
- 3천만원이하 구입장비는 공동활용 가능한 경우 i-Tube에 등록만 하고 심의는 없음

라) 사업결과의 공개 및 활용 [공통운영요령 제37조]

- 연구를 수행한 최종보고서 원문, 목록 및 초록집을 발간하여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공개
-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만료일 3개월 전에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 3년 이내 비공개
-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보유중인 사업결과는 양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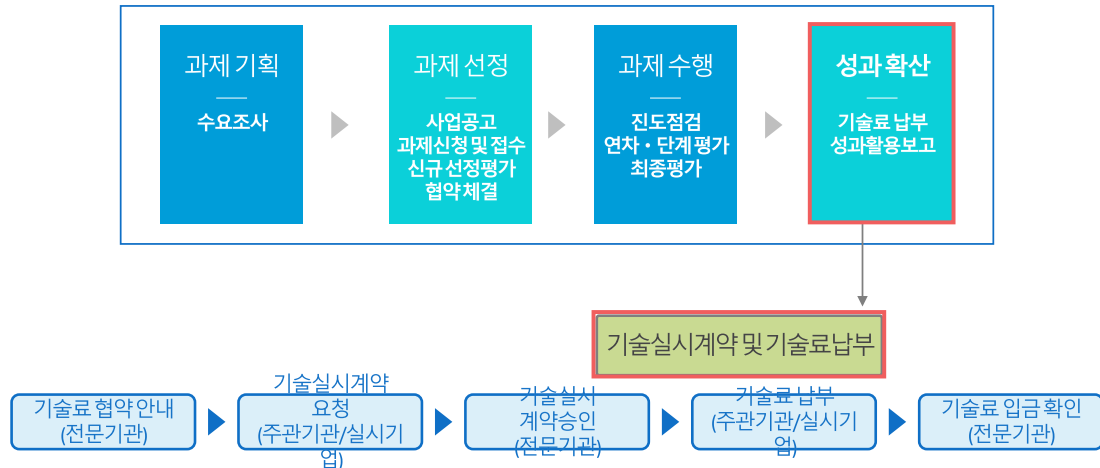
II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관련 규정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02 _ 프로세스별 주요 규정

8 사후관리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사용 및 관리의 개념>



II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관련 규정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02 _ 프로세스별 주요 규정

8 사후관리

마) 실시계약의 체결 [공통운영요령제37조의2]

기술료 요령

- 수행기관은 사업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그 참여기업이 실시기관이 됨

기술료 징수대상	최종평가결과 우수, 완료, 조기종료(우수, 완료)로 판정 받은 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즉, 기업체)
납부방법	경상기술료+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납부수단	현금
징수율 상한	-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대기업 등: 정부출연금의 40%
징수기간	7년 이내 기간 동안 기여율에 따른 기술료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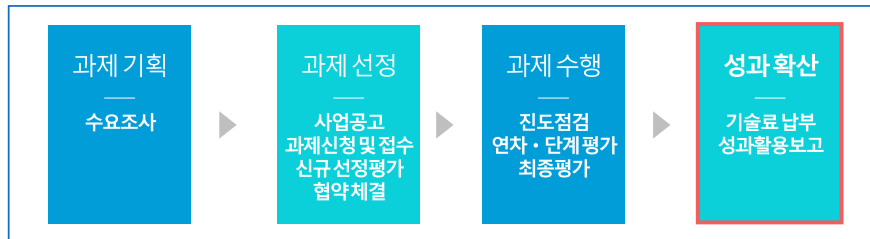
II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관련 규정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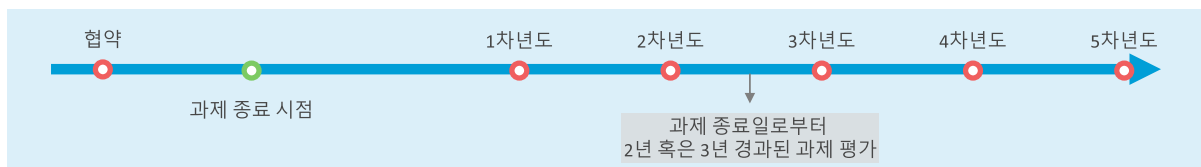
02 _ 프로세스별 주요 규정

8 사후관리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의 개념>



과제 종료 후 5년간 매년 1월 2월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과기정통부(NTS) 성과조사분석 일정과 연계)



II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관련 규정

산업기술 R&D 규정의 이해

02 _ 프로세스별 주요 규정

8 사후관리

바) 성과활용보고 및 평가 [공통운영요령 제40조]

-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
- 개발 종료 후 3년 이내 지난 과제에 대해 **연구결과**와 **활용평가**

요약

- 1 규정체계
공통운영요령 - 부속운영요령과 관계
- 2 공통운영요령의 구성
- 총칙, 추천체계, 수요발굴 및 공고, 연구개발비 신청, 연구개발비 산정
- 협약체결, 연구개발비 관리, 결과평가, 정산, 사후관리, 성과활용
- 3 프로세스별 주요내용
 - 총인건비계상률 10%이상
 - 단계평가, 최종평가 보고서 제출
 - 개인 동시수행 과제 수 : 5개 이내 (연구책임자 3개)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변경승인 및 통보사항
 - 기술료 납부 방법 및 비율
 - 장비관리(3천만원 이상 장비)

감사합니다

04

연구비

연구개발비의 이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준 비목별 사용기준, 사용·정산, 주요 불인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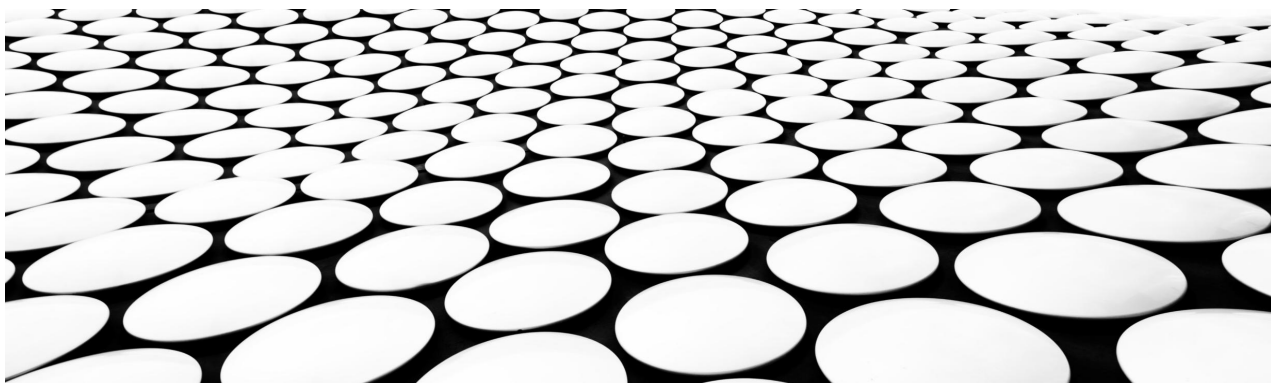
일시 1일차 10. 12.(월) 15:30 – 16:10

강의 KEIT 전호승 수석

CONTENTS

I.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이해	90
II. 연구개발비 일반	94
III.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97
IV.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정산	107
V. 주요 불인정 사례	110
Q&A · 규정 관련 문의처	114

연구개발비의 이해



04-01

Table of Contents

Section	Page
I.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이해	3
II. 연구개발비 일반	9
III.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14
IV.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정산	35
V. 주요 불인정 사례	43



04-02

1.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의 이해

Section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구성
2. 용어의 정의
3.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율

INDEX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연구개발비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 사용 및 정산

0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법의 구성

도입취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계를 혁신하여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 조성
-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 체계화

구성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총 5개장, 41개조)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총 5개장, 68개조)
- 10개의 행정규칙 운영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 연구지원기준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INDEX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연구개발비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 사용 및 정산

0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법의 구성

구 분	내 용
제 1 장 총칙	목적, 정의, 적용 범위
제 2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평가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관리, 활용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 3 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통합정보시스템, 보안, 전문기관, 연구지원, 제도개선
제 4 장 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확보 및 제재처분	연구윤리, 제재처분 및 재검토, 사후관리, 연구전염
제 5 장 보칙 및 벌칙	연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업무 위탁, 비밀유지의무 및 벌칙

INDEX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연구개발비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 사용 및 정산

0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용어의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하는 과제
주관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공동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위탁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의 일부(전문지식, 기술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국립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특정연구기관, 회사, 비영리법인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0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용어의 정의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연구개발비로 구성

비목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되는 사업비 항목

항목

비목의 세부항목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기관에게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현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부담하는 현금 이외 보유한 자산을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

인건비계상률

연구개발과제에서 지원받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지원 비율 (종전의 참여율 개념과 유사)

지출원인행위

연구개발비 집행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0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용어의 정의

산업기술혁신사업

산업기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

연구개발과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주관
연구개발기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공동
연구개발기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 및 세부를 포함)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참여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수요기업(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평가 및 검증역할을 하는 참여기업) 등이 있음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0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용어의 정의

연구개발비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단체, 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

비목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되는 사업비 항목

항목

비목의 세부항목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 현금과 현물(해당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로 부담하는 비용

현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부담하는 현금 이외 보유한 자산을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

인건비계상률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중전의 참여율 개념과 유사)

계속비

해당 단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하나의 단계로 본다) 중 해당 연차의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 현금으로 다음연차에 편성된 금액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0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율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지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영리기관	100% 이하	-	-
중소기업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30% 이상	13% 이상
대기업, 공기업	50% 이하	50% 이상	15% 이상

통합RCMS를 사용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는 건별 지급

✓ 현물의 부담

- 1)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 2) 연구시설, 장비
- 3)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01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율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율(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제25조)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원천기술형 과제		혁신제품형 과제		
	정부지원	기관부담	정부지원	기관부담	
비영리기관	100% 이하	-	100% 이하	-	-
중소기업	75% 이하	25% 이상	67% 이하	33%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30% 이상	50% 이하	50% 이상	13% 이상
대기업, 공기업	50% 이하	50% 이상	33% 이하	67% 이상	15% 이상

✓ 산업기술 R&D 기관부담 완화 제도

1) 수요기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핵심전략기술 관련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초기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준' 비율 적용

2) 도전혁신형 과제, 국제공동 연구과제, 대형통합형 과제, 서비스형 과제 등의 경우 '원천기술형 기준' 비율 적용

* 공고 시 달리할 수 있으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별 공고문의 지원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내인용 기술
개발 지원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1

04-11

II. 연구개발비 일반

Section

1. 직접비 비목의 정의
2. 간접비 비목의 정의
3. 공통계상기준
4. 사용기준

내인용 기술
개발 지원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2

04-12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02 연구개발비 일반 – 직접비 비목의 정의

직접비

인건비	-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 학사, 석사, 학석사통합, 박사, 석박사통합 과정에 있는 학생 신분 연구자의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 시설, 장비의 구입 / 임차 / 운영, 유지 및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재료비	- 시약, 재료 구입비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재료 제작비 (시제품, 시험설비)
연구활동비	- 회의비, 출장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연구수당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보안수당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비용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3

04-13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02 연구개발비 일반 – 간접비 비목의 정의

간접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 우수한 연구지원인력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 비용, 사업단 운영비 - 직접비에 산입되지 않는 기반시설, 장비 구축 및 운영비 -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활동지원금 : 학술용 도서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홍보, 행사비 -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 기술창업, 출연, 출자금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4

04-14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02 연구개발비 일반

공통계상기준

- ✓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 할 수 있는 비용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는 비용

- ① 환급 가능한 세금, 유흥성 비용
- ② 연구개발기관의 내부거래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거래, 산단과 대학 간 거래 포함)
- ③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기관 간 거래
- ④ 동일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간 간 거래

예외 - 대학이 기관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시험, 분석과 관련된 비용 중 정당한 사유로 인정 받은 경우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서 발행)

- ⑤ 중복계상 - 동일한 비용 이중계상, 현물/현금 이중계상, 직접비, 간접비 중복계상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02 연구개발비 일반

사용기준

✓ 연구개발비 공통 인정 기준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을 입증할 증명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③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는 자체 규정에 따라 구매/검수 하여야 한다. (단,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의 경우 도입심의, 조달구매 필요)
- ④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 -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부터 사용실적 보고일 까지 다음의 비용은 사용 가능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지출원인행위가 연구개발기간 중에 있는 금액

- ⑤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 - 외국 물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 납부, 연구비카드 발급 전 사용 등의 경우 지폐나 주화 사용 가능

자주묻는 질문 :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현금 또는 개인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지출결의 등을 작성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이체증 등을 보관하여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것이 일부 허용될 수 있음(개인카드 사용 X 권고)

III.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Section

1. 인건비
2. 학생인건비
3. 연구시설·장비비
4. 연구재료비
5. 연구활동비
6. 연구수당
7. 보안수당
8. 위탁연구개발비
(*) 산업기술R&D사업의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을 허용하지 않음
(과제에 참여하려는 경우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10. 간접비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03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인건비 - 사용용도

구분	사용용도
참여연구자 인건비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내부, 외부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비영리기관 연구지원전담조직(지원부서) 제외 연구부서 소속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해당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계상

- 1) 정부출연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연단위로 산정하는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인건비 계상
- 2)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 - 월단위로 산정하는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인건비 계상

✓ 인건비 계상률

인건비 계상률 = 해당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 연(월)급여 총액

(*) 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비영리기관)

(*) 연/월 급여는 관련 법령, 자체 인사(취업)규정에서 정하는 급여 총액을 의미

(*)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산정하여 인건비로 계상함(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인건비 계상률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산업기술R&D사업의 경우 최소 인건비계상률 10% 이상 유지 필요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03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인건비 – 현금계상 가능한 인건비의 범위

기관구분	현금계상 가능한 인건비
비영리기관 및 대학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 직장가입자 아닌 강사 - 명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직장가입자인 경우도 가능)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직장가입자강사는 현금 계상 불가능
외부참여연구자	외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사용용도와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금인건비
영리기관	- 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 (채용일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 이내인 자 포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두뇌전문기업 선정된 중소·중견기업,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0% 이내) -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장관이 인건비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영리기관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며 현금 가능한 대상자인지 상세한 규정 확인 필요(부처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영리기관의 경우 현금인건비 실제 지급일자 이전 RCMS 자계좌이체 시 회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필요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03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인건비 – 증빙자료 예시

구 분	증빙자료
내부인건비	-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포함) - 급여명세서(월별) - 계좌이체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영리기관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에 한함) -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근로계약서,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 관련 서류
외부인건비	- 근로계약서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 급여명세서(월별) - 계좌이체증명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근접지원인력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변경사항 등 포함) - 급여명세서(월별) - 계좌이체증명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03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학생인건비 - 지급대상자 및 계상금액

구분	설명
학생연구자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학석사통합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 포함)
학생인건비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근로계약 체결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계상

- 1)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에서 관리
- 2)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 계상,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상 불필요
- 4) 학생연구자는 과제관리시스템 등에 등록 : 학생연구자 학업, 연구 보장 및 처우 개선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03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학생인건비 - 산정기준금액

구분	세부산정기준
학생연구자	- 학사과정 : 월 130만원 이상 * 인건비계상률 - 석사과정 : 월 220만원 이상 * 인건비계상률 - 박사과정 : 월 300만원 이상 * 인건비계상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에서 정한 최소 기준 이상으로 자율적 설정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 구축요건을 만족하는 전산시스템과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갖추고 있는 대학 / 정부출연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
- 학생인건비 정산 면제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03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학생인건비 - 증빙자료 예시

구 분	증빙자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증빙 - 협약에 따라 계정대체한 학생인건비는 전액 사용된 것으로 봄 - 학생인건비 정산 면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이외	-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포함) - 해당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 계좌이체증명 -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수료등록, 휴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03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연구시설·장비비 - 사용용도

구분	사용용도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 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치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 관리 추진비용을 포함)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03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연구시설·장비비 – 주요 사용기준

구분	공 통 사 용 기 준
사전승인사항	3천만원 이상의 시설, 장비를 신규로 구입 또는 임차하려는 경우 3천만원 이상의 시설, 장비를 기존 계획과 달리 변경하여 구입 또는 임차 하려는 경우 3천만원 이상의 시설, 장비를 기존 계획과 달리 구입 또는 임차 하지 않는 경우
i-TUBE	-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의 장비, 3천만원 미만이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 대상 -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 i-TUBE에 등록
장비도입기한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마지막 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임차 완료
현물계상 범위	- 연구개발기관이 생산, 판매하는 시설과 장비, 과제 시작 이전부터 소유, 임차, 임대 중인 연구시설장비 - 구입가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은 3천만원이상의 장비(부가가치세 및 구입, 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심의를 거친 장비는 산업기술개발장비통합관리요령 제20조에 따라 구매하여야하고 유휴, 불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i-tube를 통해 처분신청 필요

* 연구개발기관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3~25조에 따라 장비를 자산등재 및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해야 함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5

04-25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03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연구시설·장비비 – 증빙자료 예시

구 분	증 빙 자 료
연구시설장비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 구매의뢰서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기재) -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공문 - 외자구매 : 수입신고서류 혹은 관련 증명 자료 - 계약서 작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계약서 -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시설, 장비 사용료의 경우, 사용료 산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증명(사용시간, 결과물 등) 자료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6

04-26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03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연구재료비

구분	설명
사용용도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시험제품, 시험설비 제작비(자체제작, 외부제작 모두 포함)
공통사용기준	1)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 생산하고 있는 경우 현물로 계상 2) 연구개발과제 종료일까지 구매 가능(검수완료일을 기준으로 함) 3)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증빙서류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구매의뢰서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기재) - 외자구매 : 수입신고서류 혹은 관련 증명 자료 - 시제품 내부제작의 경우 : 재료비 소요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 -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세금계산서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03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구분	설명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계상(초과 시 소명서 제출 필요)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숙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출장비	국내외 출장 비용(영 제19조제4항제3호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활용비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연구실운영비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연구인력 지원비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03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연구활동비 - 사용기준

구분	공 통 사 용 기 준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직접비(현물포함) 협약금액의 40%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중소기업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다른 항목으로 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후 잔액은 변경 가능 - 표준연계 과제의 경우 표준화 활동 연계 전략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1억원 이내) 계상하여야 하고, 다른 항목으로 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후 잔액은 변경 가능
자체규정 우선	- 전문가활용비는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 실비 계상 - 출장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회의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함 10만원(VAT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빙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음 - 동일기관만 참석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 계상 불가
기간의 인정 특례	-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를 사업비로 계상할 수 있음 - 학회 연회비(1년) 대상 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 후 기간에 대해서도 인정
논문게재료	연구개발비 지원기관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 시 사용 가능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04-29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03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연구활동비 - 사용기준

구분	공 통 사 용 기 준
연구인력지원비 계상 불가 예시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 - 참여연구자의 중신학회비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 세미나 참가비 및 교육훈련비 -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식대
동일기관 집행 인정	- 참여연구자와 동일 부서(연구실) 아닌 경우 비영리기관 상호 간 또는 내부 전문가활용비 사용 가능 - 영리기관 제외
소모성비용 계상 불가	- 소모성비용 계상 불가 - 단, 사무용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와 주변기기포함)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3호 서식(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계획)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음 - 사무용품비는 활용, 관리 계획과 무관하게 사용 가능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0

04-30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03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연구활동비 – 증빙자료 예시

구 분		증빙자료
지식재산창출활동비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결과보고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기술도입계약서, 기술검수조서 등
	전문가활용비	- 전문가인적사항 포함한 내부결재문서 - 자문내역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
회의비	회의장임차료	견적서
	회의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참석자 전원 서명날인 불필요)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회의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 기재한 문서 가능
	세미나개최비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내용 포함한 내부결재문서 혹은 회의록
소프트웨어 활용비		- 구매의뢰서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포함) - 계약서 작성에 의한 경우 계약서 -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1

04-31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03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연구활동비 – 증빙자료 예시

구 분		증빙자료
국내 출장비	여비기준 있는 경우	- 여비기준 - 출장신청서
	여비기준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 출장관련 서류
국외 출장비	여비기준 있는 경우	- 출장계획서 (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 내부여비규정 - 출장결과보고서
	여비기준 없는 경우	- 출장계획서 (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 출장결과보고서 -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 출장관련 서류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 자체계획 내부분서 - 거래명세서 - 자문내역 포함된 자문확인서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2

04-32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03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연구활동비 – 증빙자료 예시

구 분		증빙자료
연구실 운영비	기기, 소프트웨어 구입, 설치, 임차, 사용대차	- 구매의뢰서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포함) - 거래명세서 - 계약서 작성에 의한 경우 계약서 -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자체규정
	사무용품비, 비품구입비	- 자체규정 - 거래명세서
	비영리기관 소모성경비	- 자체규정 - 거래명세서
연구인력 지원비	국내외교육훈련비	-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 교육수료증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학회등록비 영수증 - 논문초록, 발표자료
	야근, 특근 식대	초과근무확인내역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3

04-33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03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연구수당

구분	설명
사용용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
연구개발기관별 한도	- 인건비, 학생인건비, 현물인건비, 미지급인건비 합계액의 20% - 협약 시 산정한 연구수당 총액은 증액할 수 없음(단, 단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에서 재산정하거나, 연구개발비가 증액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사전승인을 통해 증액 가능) - 연구수당 지급비율은 직접비 사용비율의 20%포인트를 초과할 수 없음
참여연구자별 한도	-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에게 연구수당 사용금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1명만 참여하는 경우 100% 지급 가능)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개인별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
지급대상	- 참여연구자를 지급대상으로 하므로, 연구지원인력과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수당 지급대상이 아님

보안수당

구분	설명
사용용도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참여연구자별 한도	참여연구자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한 인건비의 3% 이내로 계상 가능
지급대상	참여연구자를 지급대상으로 하므로, 연구지원인력과 연구근접지원인력은 보안수당 지급대상이 아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4

04-34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03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탁연구개발비(참고용)

구분	설명
사용용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지급하는 비용
전체한도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제외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승인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려 하는 경우 사전승인이 필요함
동일한 기준의 적용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따라야 함(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계상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위탁연구개발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정산 및 회수	(정산) 전문기관의 정산 대상에 해당 (회수) 전문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잔액 등 직접 회수 가능
증빙	계좌이체증명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이체한 입금증)

(*) 산업기술R&D사업의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을 허용하지 않음(과제에 참여하려는 경우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03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구분	설명
사용용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그 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국제공동연구 계약서 등 제출 필요)
증빙예시	계좌이체증명 (해당 금액의 입금증) 해당 국외기관의 연구개발비 자체정산결과보고서([서식 7] 연구개발기관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를 참고하되 기관 또는 국가별 서식이 있을 경우 해당 서식 사용)

INDEX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연구개발비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 사용 및 정산

03 비목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간접비

구분	설명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지원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연구지원비	-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 사업단, 연구단이 운영되는 경우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 기반시설, 장비 구축 및 운영비(대학) :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운영비 및 장비 구입비 -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상하는 비용 - 연구보안관리비 : 보안활동 관련 비용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기술자료임치 비용,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 연구윤리활동비 : 윤리규정 제정과 운영 등 연구윤리활동 비용 - 연구활동지원금(비영리기관) : 학술용 도서, 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등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비용 (과학홍보 및 행사 프로그램 운영비 등) -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비용 - 연구노트 작성,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운영 또는 교육, 인식확산 활동, 연구노트 활성화 비용 - 기술창업 출연, 출자금

내인용 기술
개발비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7

04-37

IV.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정산

Section

1. 사용절차
2. 협약의 변경
3. 정산
4. 정산기준

내인용 기술
개발비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8

04-38

INDEX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연구개발비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 사용 및 정산

04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정산

사용절차



사용절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하여야 하며,
-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위임받은 자 포함)의 발의를 거쳐야 함
- 사용 시 일괄지급대상은 사용한 날부터 5일 이내, 건별지급 대상은 연구개발비 사용 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여야 함



관련 증빙의 보관

-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단,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증빙은 보관 의무 면제)

INDEX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연구개발비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 사용 및 정산

04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정산

협약의 변경



사전승인 필요한 변경

-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의 변경
-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여는 경우(총액변경에 대해서만 승인 필요)
- 영리기관이 연구실운영비 총액 증액 또는 품목을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총액이 유지되는 경우 기존 품목의 수량 증가는 통보를 승인으로 갈음)
- 연구시설장비비(구입 또는 임차) 관련 사항 (3천만원), 외주용역비(3천만원)
- 단계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변경,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변경, 연구수당 총액 증액
-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시켜 사용하려는 경우



통보성 변경 사항

- 연구개발과제 추진 방법의 변경 및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변경(간접비, 연구수당 증액은 제외)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변경,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INDEX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연구개발비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 사용 및 정산

04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정산

정산



상시점검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산 실시 전에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점검
- 사용용도나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 내역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정산

- 사용실적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
- 정산실시
: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정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정산 실시

INDEX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연구개발비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 사용 및 정산

04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정산

정산기준



정산기준

- ①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에 부합하고,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사용용도,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사전승인 사항에 대해 승인을 득한 경우, 이자의 사용용도에 부합하는 경우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② 비영리기관에 지급한 간접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 지급한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기관에 지급한 연구시설·장비비가 통합관리계정에 이체 또는 계정대체 된 경우 적정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인정될 수 있다.
- ③ 적정하게 사용한 직접비(간접비)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직접비(간접비) 사용잔액으로 본다.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자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규정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부담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현물부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물부담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적정하게 부담한 것으로 본다.

V. 주요 불인정 사례

Section

1. 연구수당
2. 인건비
3. 연구시설 장비비
4. 기타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주요 불인정 사례

05 주요 불인정 사례

연구수당

✓ 개인 연구수당 지급한도 초과

개인별 연구수당 지급한도는 개인 인건비 지급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① 예시

- A연구원 총인건비: 500만원
- A연구원 연구수당 지급 한도: 350만원
- A연구원 연구수당 지급 금액: 400만원
- 불인정(회수) 금액: 50만원

A연구원	금액
총 인건비	500만원
연구수당 지급 한도	350만원
연구수당 지급 금액	400만원
불인정 금액	50만원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주요 불인정 사례

05 주요 불인정 사례

연구수당

✓ 직접비 집행비율 대비 연구수당 초과 집행

① 연구수당 계상 대비 실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비율은 '직접비사용비율+20%'를 초과할 수 없음

② 예시

- 직접비 집행비율 : 70%
- 연구수당 계상액 : 600만원
- 연구수당 집행 가능액 : 540만원 (600만원X(70%+20%))
- 연구수당 집행액 : 600만원
- 불인정금액 : 60만원

직접비 집행비율 : 70%	금액
연구수당 계상액	600만원
연구수당 집행 가능액	540만원(600만원X(70%+20%))
연구수당 집행액	600만원
불인정 금액	60만원

INDE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사용 및 정산

주요 불인정 사례

05 주요 불인정 사례

연구수당

✓ 실집행 인건비 대비 연구수당 초과 집행

①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할 수 있는 연구수당(최대액)은 해당과제의 '인건비(연구근접인력 제외)+학생인건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② 예시

- 인건비 계상 : 6,000만원
- 연구수당 계상 : 1,200만원
- 실집행 인건비 : 5,000만원
- 실집행 인건비 대비 연구수당 집행 가능액 : 1,000만원 (5,000만원X20%)
- 연구수당 집행액 : 1,200만원
- 불인정금액 : 200만원

인건비	금액
인건비 계상액	6,000만원
연구수당 계상액	1,200만원(6,000만원X20%)
실집행 인건비	5,000만원
실집행 인건비 대비 연구수당 집행 가능액	1,000만원(5,000만원X20%)
연구수당 집행액	1,200만원
불인정 금액	200만원

INDEX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연구개발비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 사용 및 정산

- 주요 불인정 사례

05 주요 불인정 사례

연구수당



연구수당 1인 지급액 초과

- ①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연구수당을 개인별로 70% 이상 지급할 수 없음
- ② 예시

- 연구수당 계상액: 1,000만원
- 1인 지급 최대 금액: 700만원
- 1인 지급액: 900만원
- 불인정금액: 200만원

연구수당	금액
연구수당 계상액	1,000만원
1인 지급 최대 금액	700만원
A연구원 지급 연구수당	800만원
불인정 금액	100만원

INDEX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연구개발비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 사용 및 정산

- 주요 불인정 사례

05 주요 불인정 사례

인건비



참여율 대비 초과 집행

- ① 인건비지급액은 해당 참여연구원의 급여X인건비계상률을 초과할 수 없음
 - ② 예시
- A연구원 인건비: 1,000만원
 - A연구원 인건비계상률: 50%
 - 해당과제에서 A연구원에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 한도: 500만원
 - A연구원 인건비 집행액: 1,000만원
 - 불인정금액: 500만원

INDEX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연구개발비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 사용 및 정산

- 주요 불인정 사례

05 주요 불인정 사례

연구시설장비비

-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비 사용기준 위반

사전 승인 없이 기존 계획에 없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한 경우 불인정

- ① 사전 승인 없이 기존 계획에 있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다른 비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불인정
- ② 사전 승인 없이 기존 계획에 있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연구시설/장비 구입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불인정
- ③ 기존 계획에 있더라도 장비도입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한 경우 불인정
- ④ 최종단계종료일 기준 2개월 이내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

INDEX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연구개발비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 사용 및 정산

- 주요 불인정 사례

05 주요 불인정 사례

기타

- 연구개발계획서 미반영 연구실운영비(영리)

- ①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 구입
 - 연구환경유지비 : 선풍기, 파티션, 에어컨, 온풍기
 - 범용성 장비 : PC, 컴퓨터 프로그램, 책상, 외장하드, 노트북, 멀티탭, 콘센트, 공유기, 컴퓨터 케이블 등

- 정산기간 내 원인행위 또는 집행 미완료

- ① 시험분석보고서 미제출
- ②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 입고된 재료/도서 등
- ③ 과제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라이선스 구매 비용
- ④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2개월 전에 납품 완료되지 않은 장비 구입 금액

Q & A

04-51

▶ 규정 관련 문의처

- R&D콜센터: 1544-6633
- 산업기술정보포털(ITECH) → 고객센터 → 문의하기 → 일반문의, 1:1전문상담

▶ RCMS 관련 문의처

- 고객지원센터: 1661-5855
- RCMS → 고객지원 → 문의답변 → 이용문의

▶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관련 문의처

- 통합콜센터: 1877-2041, 042-862-1500
- IRIS → 알람·고객 → 서비스·시스템문의 → 사용문의

04-52